

현안분석 2007-05

입법평가 연구 07-04

#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Ⅳ) - 영국의 규제영향평가제도 -

2007. 5.

#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Ⅳ) - 영국의 규제영향평가제도 -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of Developed State  
-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of U. K. -

2007. 5.

연구자 : 박영도(선임연구위원)  
Park, Young-Do  
장병일(부연구위원)  
Jang, Byoung Il

## 국문요약

영국에서는 1997년 블레어 수상이 취임하면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규제완화를 필두로 하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블레어 수상은 선진규제의 원칙으로서 ①투명성(Transparent), ②설명책임(Accountable), ③목표명확성(Targeted), ④논리일관성(Consistent), ⑤리스크와 비용의 균형성(Proportionate) 등 5대 원칙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1998년 8월에는 모든 규제도입에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의무화하였다. 그 후 2000년 8월 9일 “규제영향평가지침(Good Policy Making : A Guide to 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을 공표하였다. 2001년 4월에는 “규제개혁법(Regulatory Reform Act)”을 제정·시행하여 협의(Consultation)문서의 제출과 규제영향평가보고서의 첨부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규제가 생겼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추가부담을 지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제개혁 추진기구로서 “선진규제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을 설치하여 각부처에 매년 규제개혁 목표를 부과하고 실행을 강제하도록 하였다. 한편 2006년 11월 8일 “입법 및 규제개혁법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을 제정·시행하는 한편 종전의 규제영향평가지침도 보완하여 새로운 “규제영향평가지침(Regulatory Impact Assessment Guidance)”을 공표하였다.

새로운 규제영향평가지침에서는 규제영향평가에 관한 단계별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 지침의 대상은 “규제”로부터 “정책전반”으로, 영향의 범위도 “개인차원”에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 환경의 범위로 확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외에 규제

영향평가의 각 요소별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영국의 규제영향평가는 그 규제안이 부처의 목적 등에 비추어 왜 필요한가를 충분히 설명하고 기업 등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를 가능한 한 수치로 분석한다. 영향은 플러스영향(편익)과 마이너스영향(비용)으로 나누어 분석되고 마지막으로 비용-편익에 의하여 순편익이 도출된다. 규제안뿐 아니라 그 대체안의 비용과 편익도 계산된다. 비용 중에는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compliance cost)이 중요시되고 있다.

※ 키워드 : 영국의 규제개혁, 규제영향평가, 규제개혁법, 규제비용, 규제영향평가지침

## Abstract

The United Kingdom accelerated its regulatory reform, with the relaxation of regulations being a top priority in a series of administration reforms, as Prime Minister Tony Blair took office in 1997. The Prime Minister publicly announced principles of better regulation epitomized as the five principles: (1) Transparency; (2) Accountability; (3) Targeting; (4) Consistency; and, (5) Proportionality. In August 1998, regulatory impact assessments became mandatory for the introduction of each new set of regulations. On August 9, 2000, 'A Guide to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was released. Following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ory Reform Act in April 2001, the submission of consultation reports became obligatory, to be accompanied with attachment of reports on regulatory impact assessments.

Despite continuous regulatory reforms, new regulations were generated, resulting in criticism resulting in burdens of additional compliance costs on companies. As a result, a new regulatory reform promotion agency, 'Better Regulation Executive,' was established, setting annual goals regarding regulatory reform for each government department and compelling the implementation thereof. However, a new report,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Guidance' was published by making supplementations to the previous report, while the Legislative & Regulatory Reform Act was provided for and implanted on November 8, 2006.

The new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Guidance' report presents detailed step-by-step procedures and standards for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The provisions are aimed at expanding its guidance target from 'regulation' to 'policy at large,' and expanding the scope of impact from 'on an individual scale' to 'on an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cale'. Except for the guidelines, detailed standards for assessment by each element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re separately prepared. The UK's regulatory reform assessment gives full explanation of the necessity for regulatory Bills in view of the nature of th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 It also shows numeric analysis on what impact would be imposed on a company, wherever possible. Impact is analyzed by division into positive impact (benefits) and negative impact (costs), giving rise to a net-benefit by deducting benefits from costs at the end. Crucial among such costs are the compliance costs entailed in regulatory compliance.

※ Keywords : regulatory reform in the UK,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Act, regulatory costs,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guidance

## 차 례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 1 부 영국의 규제영향평가제도 개관 .....	9
I. 의 의 .....	13
II. 규제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	17
III.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주요내용 .....	23
제 2 부 규제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47

## 제 1 부

# 영국의 규제영향평가제도 개관

# 목 차

I. 의 의 .....	13
II. 규제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	17
1. 법적 근거 .....	17
2. 규제영향평가지침 .....	21
III.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주요내용 .....	23
1. 목적 및 의도한 효과 .....	25
2. 협의 .....	26
3. 대안의 고려 .....	27
4. 비용편익분석 .....	28
5. 중소기업영향테스트 .....	32
6. 경쟁평가 .....	35
7. 집행, 제재 및 모니터링 .....	39
8. 이행 및 집행계획 .....	43
9. 사후검증 .....	44
10. 요약문 및 추천문 작성 .....	44
11. 선언 및 공식발표 .....	45

## 제 1 부 영국의 규제영향평가제도 개관

### I. 의 의

영국에서는 1979년 대처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조노력과 자기책임의 원칙, 작은 정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민영화와 개별업적평가 시스템인 FMI(Finance Management Initiative)를 추진하였다.<sup>1)</sup> 그 후 1990년 메이저정부가 공적서비스제공 시스템 자체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기관 중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정책형성이외의 정부기능을 종래의 정부기관과 명확히 분리된 조직체로 이행하는 “Next-Steps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1993년 이후로 법령에 관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가능한 한 조기에 당해 규정이 산업에 대하여 미치게 될 효과를 평가하고, 구체적으로는 민간부문에 발생하게 될 비용과 각종 부담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여 왔다. 이러한 절차는 우선적으로 규제완화를 위하여 투입되고 있으며, 소비재가격의 인하,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소득수입의 개선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행정부산하에 산업계의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인 “규제개혁실(Deregulation Unit)”을 설치하여 “비용평가(CCA : Cost Compliance Assessment)”를 개발하였다. 이 평가에는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 효과가 고려되고 있으며, 이른바 “리트머스 테스트(litmus test)<sup>2)</sup>”를 통하여 표본적으로 선정된 2-3개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령

- 
- 1) FMI는 업무운영책임을 가능한 한 하급관리직 등에 분산화하여 현실에 적응한 업무운영을 도모하고 업무목표의 달성과 비용절감의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①조직단위마다 명확한 조직목표의 설정, ②조직목표에 따른 실적평가와 소요비용을 상세히 계측·검토, ③업무운영에 관련한 자원활용도의 분석, ④비용부분을 중심으로 한 행정정보의 정비 등을 개혁목표로 한다.
- 2) 리트머스 검토(litmus test)란 2개 또는 3개의 소규모 기업을 선정하여 이 기업들과 입법계획의 결과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용부담을 예시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후 1997년 5월 총선거에서 노동당이 압승하고 블레어 수상이 취임하면서 다수의 제도개혁에 착수하였으며,<sup>3)</sup> 그 가운데 법령 등에 의한 모든 규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 그 규제안에 대하여 사회적 편익, 비용, 리스크 등을 사전평가함으로써 특히 기업에 대한 부담 증가에 따른 시장경제의 저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공공사업평가제도의 충실·개혁을 추진하였다. 사업평가에 관하여는 지금까지의 사업의 영향에 고려되지 않았던 환경 등을 새로이 평가항목에 추가함과 아울러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비용과 편익에 관해서도 사회전체에 대한 모든 것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보수당정권시대의 정부규제가 기업 등의 민간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가져와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규제완화를 필두로 하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흐름이 사회전체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평가를 사업뿐만 아니라 규제를 포함한 정책전반에 적용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1997년 9월 블레어수상은 보수당정권시대에 설치된 규제개혁실을 개편하여 비용 이외에 가능한 효율성도 평가하기 위하여 선진 규제실(Better Regulation Unit)을 설치함과 아울러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선진규제테스크포스(The Better Regulation Task Force)”를 신설하고, 선진규제의 원칙으로서 ①투명성(Transparent), ②설명책임(Accountable), ③목표명확성(Targeted), ④논리일관성(Consistent), ⑤리스크와 비용의 균형성(Proportionate) 등 5대 원칙을 공표하였다.

3) 블레어정부의 개혁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①Modernising Government 개혁이다. 이것은 각 정부부문의 미션을 명확히 하고 IT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향상과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의욕적인 행정개혁이다. ②규제개혁이다.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법령개폐를 기다리지 않고 부당한 규제배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③전자정부의 추진이다.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하고 효율적인 정부실현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1998년 8월에는 모든 규제도입에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의무화하였다.<sup>4)</sup> 이에 수반하여 선진규제실을 다시 개편하여 “규제영향실(Regulatory Impact Unit)”을 설치하여 동년 8월 10일에 “선진규제지침(The Better Regulation Guide)”을 공표하고<sup>5)</sup>, 규제영향평가의 적용범위를 경제영역에서 환경, 농업, 의료, 사회보장,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조직명칭의 변경은 영국정부가 법령의 입법에 관한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국면에 있으며 선진규제테스크포스 및 정부부처 내 하위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 후 2000년 8월 9일 선진규제가이드를 내실화·보완하여 “규제영향평가지침(Good Policy Making : A Guide to 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을 공표하였다.

2001년 4월에는 “규제개혁법(Regulatory Reform Act)”을 제정·시행하여 협의(Consultation)문서의 제출과 규제영향평가보고서의 첨부이 의무화되고, 그 프로세스 가운데 규제영향평가지침이 보완되었으며, 2002년에는 새로이 “경쟁평가”를 규제영향평가의 일부로서 실시할 것을 결정하여 동년 9월 1일부터 모든 규제안에 의무화되었다. 이와 아울러

---

4) 규제영향분석은 과거의 비용분석(Cost Compliance Assessment)체계를 변경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①과거에는 비용만 추산하였지만, 이제는 비용과 편익도 추산한다는 점, ②규제영향분석은 공적 토론에 이바지하고 조사된 모든 자료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술할 분량이 많지 않다는 점, ③규제영향분석은 비용을 줄이는 입법계획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비용을 양산하거나 증가시키는 입법계획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 ④지금까지의 비용추산에 관한 입문서가 상세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반해, 규제영향분석에서는 산정방법에 관한 정보만 발견되며 보다 적합한 산정방법에 관한 재량의 여지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 ⑤과거와는 달리 이제부터는 입법계획에 관한 몇 가지 유형들은 명시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5) 이 지침은 종래 별도로 행해졌던 비용평가(CCA)와 규제사전평가(편익분석)를 통합하여 규제영향평가로서 실시되도록 하였다. 이 지침은 규제책정의 수순에 관하여 해설한 제1부와 규제영향분석에 관하여 해설한 제2부로 구성되었다. 이 지침은 산업, 자선사업, 자원봉사조직에 비용을 미치는 규제 또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안(규제완화)을 행하는 때에 규제영향분석을 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만, 규제완화의 경우에는 보다 간편한 분석을 하는 것도 용인하였다.

“경쟁평가 가이드라인(Guidelines to Competition Assessment : A Guide to Policy Makers Completing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및 “경쟁평가 체크리스트(Competition Assessment Checklist)”를 공표하여 규제영향평가 지침의 부록에 추가하였다. 경쟁은 생산성, 효율성, 신제품의 개발, 적절한 가격설정, 이노베이션, 생산기술의 개량 또한 소비자의 선택의 확대를 견인하는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나 규제는 직접·간접으로 경쟁의 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규제의 입안·재검토에 즈음하여 행정기관 내지 규제당국은 규제영향평가 가운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평가제도의 배경에는 EU에 선행하는 영국의 유효경쟁리뷰(전기통신분야)의 성공, 과거의 민영화·규제완화의 실패로 얻은 교훈(경쟁증진을 도모하지 않았던 분야에서 경제성과의 저조)이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23,000여개의 새로운 규제가 생겼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매년 400억 파운드에 달하는 추가부담을 지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었다. 아울러 의회에서도 현행 규제영향평가의 대상범위의 확대, 규제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규제 의사결정을 위한 보다 공식적인 기준의 설정, 일반인의 의견수렴절차 개선 등 현행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저한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정부에게 요구하였다.<sup>6)</sup>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기업인인 Philip Hampton(대형소매 기업인 Sainsbury 이사회 의장)에게 현행 규제개혁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의뢰하였고, 이 보고서의 권고안을 토대로 Gordon Brown 재무장관이 2004년 3월 하원에서 향후 4년에 걸친 규제개혁정책으로서 규제관련기구의 대폭 축소,<sup>7)</sup> 규제축소를 위한 접근방법의 개혁으로서 위험도에 기초

6) 자세한 내용은 House of Commons Regulatory Reform Committee, Operation of the Regulatory Reform Act 2001, First Special Report of Session 2004-05, HC 273.

7) 이를 위하여 영국정부는 National Weights and Measures Laboratory(국립도량형연구소) 및 Engineering Inspectorate(기술검사소)를 폐지하고, 통산산업부의 기업조사 사무소

한 규제부과 시스템도입,<sup>8)</sup> 기업조사 서류의 간소화 및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함께 적지 않은 비효율을 보이고 있는 행정내부의 Red-tape 축소를 위한 개혁 등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로서 공무원이 장을 맡고 있는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의 규제영향실(Regulatory Impact Unit)을 개편하여 규제개혁정책의 효과적이고 철저한 추진을 위해 민간기업인이 책임을 맡게 될 새로운 기구로서 “선진규제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을 설치하여 각 부처에 매년 규제개혁 목표를 부과하고 실행을 강제하도록 하였다. 한편 내각사무처의 선진규제국에서는 현행 규제개혁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2001년 규제개혁법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sup>9)</sup> 동 보고서의 건의 내용을 수용하여 2006년 11월 8일 “입법 및 규제개혁법(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을 제정·시행하는 한편 종전의 규제영향평가지침도 보완하여 새로운 “규제영향평가지침(Regulatory Impact Assessment Guidance)”을 공표하였다.

## II. 규제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 1. 법적 근거

영국에서의 규제개혁에 관한 최초의 법적 기반은 1994년의 “규제완화 및 외주화법(Deregulation and Contracting Out Act 1994 : DCOA)”이

---

(Companies Investigations Branch)를 기업파산청(Insolvency Service Agency)과 통합하는 등 31개의 국가 규제관련기구를 7개로 통합하였다.

8) 이 제도는 규제영향평가에 있어서 기업에 대한 조사 등은 위험도가 높은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행하고 위험도가 낮고 잘 운영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규제가 면제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도입될 경우 연간 약 1백만 건의 조사(전체의 1/3에 해당)가 줄어들고 규제기구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서류의 1/4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9) Better Regulation Executive, Review of the Regulatory Reform Act 2001,

다. 동법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무장관이 판단한 경우 의회에 대하여 그 개정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법령개폐를 기다리지 않고 부당하거나 과도한 규제의 배제를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즉, 법률에 의하여 기업 기타에게 부과된 부담을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명령으로 그 법률의 개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하였다. 종래 제정법을 개폐하는 데에는 별도의 제정법에 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헨리8세조항”으로 부르는 위임규정 즉, 그 법률의 개폐를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을 그 법률가운데 있는 법률만이였다. 이 의미에서 동 법률은 주목되는 법률이였다. 규제완화명령을 발하는 장관의 권한에 대하여는 안전장치가 설정되어 ①규제완화명령에 벌칙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정하고, 강제적인 출입, 검사 또는 조사를 행하거나 증거제출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하며, ②제안된 명령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의견을 장관이 고려하며, 나아가 의회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되는 때에 관계자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③제안된 명령에 대하여 의회가 60일 동안 심사를 행하도록 하였다.<sup>10)</sup> 그러나 동법은 규제철폐이외에 다른 선택방안이 없고 필요한 사회적 규제일지라도 과도하거나 부당한 규제일 경우 적절한 사안처리가 곤란하였다.

그 후 1998년 블레어정부는 증거에 의거한 실효성이 높은 정책입안을 지향하기 위하여 수상성명으로 일련의 규제개혁정책을 정치주도로 실시하였으며, 1999년 3월에 “정부현대화(Modernizing Government)” 정책<sup>11)</sup>이 본격화되어 기업 등에 불필요한 규제의 배제와 정부의 현대화

10) 동 법률의 시행이후 48회의 규제완화명령(Regulatory Reform Order)이 발동되었다. 예를 들면, 조합비의 급료로부터의 원천징수허가를 3년마다 하도록 한 것, 등기소의 예약을 3월에서 12월전으로 확대한 것 등이다. 이 규제완화명령은 그 대상범위가 한정되어 비교적 적은 문제에서 활용되었다.

11) 정부현대화정책의 골자는 ①정책입안에서의 전략적이고 부처간·민관연대에 의한 복합적 계획의 실현, ②공적서비스제공책임으로서 이용자의 요구에 합치한 서비스 제공, ③공적서비스의 질추구로서 효율적으로 고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④IT정

라는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일련의 규제개혁정책을 법제화하는 한편 필요한 사회적 규제를 배려하고 부당하거나 과도한 규제의 배제에 대한 주무장관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강화하여 기동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2001년 규제개혁법(Regulatory Reform Act 2001)”을 마련하였다. 동 법률은 우선 규제완화를 명령할 수 있는 장관의 권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즉, ①명령규정을 만들어 재제정할 수 있도록 한 점, ②추가적 부담을 부과하는 점, ③명령이 다른 부담을 경감 또는 제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정법에 있어서 비정합 및 변칙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 ④법령의 결여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담을 취급하는 점, ⑤명령이 제정되어 적어도 2년 이상 경과하고 그 동안에 실질적 부분이 개정되지 않은 제정법에 적용되는 점, ⑥장관이나 부처를 포함 그 자가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라도 부담을 제거할 수 있는 점, ⑦사무상 또는 상세한 부분에 관하여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결절차에 따라 종속규정명령으로 개정을 인정한 점 등이다.

이러한 명령권한의 범위가 확대되어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정장치와 심사제도가 강화되었다. 종래의 안전장치로서 “필요적 보호테스트(necessary protection test)”가 있으며 건강, 생명, 안전 등에 저촉하지 않을 것이 조건으로 되었다. 동 법률은 이에 추가하여 기존의 권리와 자유의 행사의 계속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명령이 그 행사를 방하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기대테스트(reasonable expectations test)”가 새로이 추가되었다. 또한 명령이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결과로서 얻어지는 이익에 상응하는 “비례배분원칙(proportionate)”, 공익과 개인의 권리의 “공정한 발런스(fair balance)”, 다른 자의 부담의 경감과 이익의 증가가 된다는 “바람직함(desirable)”

---

부의 실현으로서 공적서비스에의 적극적인 신기술도입, ⑤공적서비스의 중시로서 시민지향적인 서비스의 혁신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라는 엄격한 테스트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테스트에 추가하여 유럽인권조약에의 적합성에 관한 장관표명, 규제영향평가라는 안전장치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규제개혁절차도 강화하여 과잉규제에 대하여는 ①소관장관이 공개협의회(extensive public consultation)를 개최하여 심의를 개시하고, 그것이 가결된 경우에 소관장관은 규제수정안(proposals for Orders)을 의회에 회부한다. ②의회에서는 각원의 심의회(scrutiny)에서 심의를 개시하여 장관이 제출한 규제수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경우에는 규제수정안(Regulatory Reform Order)이 성립하고, 의회의 심의회가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소관장관은 규제수정안을 철회하거나 또는 수정한 후에 다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법률은 규제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종래 사용되었던 절차에 추가하여 새로이 규제집행실무규정(Code of Practice)을 제정하는 권한을 장관에게 인정하였다. 이것은 불합리한 규제의 집행을 방지하는 역할을 거둔다.<sup>12)</sup> 한편 동 법률에서는 동법시행이전의 기존규제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법률 및 하위법령도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의원입법에 대하여도 규제영향평가의 실시를 권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2006년 11월에 성립한 “입법 및 규제개혁법(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에서는 입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담을 제거·감소하기 위한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고, 규제의 원칙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EU의 규제개혁정책과 일치시키기 위한 관련 규정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

12) 이 법률에 앞서 이미 규제의 집행에 관한 개혁이 진행되었다. 규제를 행하는 자와 규제를 받는 자와의 협력을 기본으로 하여 기업경영자, 자원봉사단체, 소비자 및 행정에 의한 협력이 거듭되어 집행협정이 체결되었다. 집행협정은 집행직원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기술한 것이다. 중앙 및 지방의 집행기관은 집행협정의 원칙 및 절차에 자발적으로 따르게 된다.

## 2. 규제영향평가지침

영국의 규제영향평가를 위한 지침은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1998년의 “선진규제지침(The Better Regulation Guide)을 필두로 하여, 이를 보완하여 2000년의 “규제영향평가지침(Good Policy Making : A Guide to 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이 성립하였다.<sup>13)</sup> 그 후 이 지침은 수차례에 걸쳐 보완되어 최근(2006년)에는 “규제영향평가지침(Regulatory Impact Assessment Guidance)”이 시행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규제영향평가에 관한 단계별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다.<sup>14)</sup> 이 지침의 대상은 “규제”로부터 “정책전반”으로, 영향의 범위도 “개인차원”에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 환경의 범위로 확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외에 규제영향평가의 각 요소별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세부기준	기준설정부서
목적 및 의도된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terdepartmental Liaison Group on Risk Assessment : ILGR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ealth &amp; Safety Executive (HSE)</li> </ul>
협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de of Practice on Consult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binet Office</li> </ul>

13) 2000년 지침에서 규제영향평가없이 기업, 자선 또는 자원봉사조직에게 영향을 부여하는 규제, 규칙의 제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규제나 규칙, 대체조치의 도입에 있어서는 비용과 편익의 비교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환경적인 면에서의 영향을 포함한 완전한 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14) 자세한 내용은 [http://www.cabinetoffice.gov.uk/regulation/ria/ria\\_guidance/index.asp](http://www.cabinetoffice.gov.uk/regulation/ria/ria_guidance/index.asp)

평가항목	세부기준	기준설정부서
대안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report : Alternatives to Regulation</li> <li>•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Report : Imaginative Thinking for Better Regul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Better Regulation Task Force(BRTF)</li> </ul>
비용 편익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RIA costs and benefits checklist</li> <li>• The Treasury Green Book</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binet Office</li> </ul>
중소기업에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mall Firms Impact Test : Guidance for Policy Maker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mall Business Service (SBS)</li> </ul>
경쟁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uidelines for Competition Assessmen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ffice of Fair Trading (OFT)</li> </ul>
이행 및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uccessful Delivery Toolki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OGC)</li> </ul>
사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Annual Report 200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Better Regulation Task Force(BRTF)</li> </ul>

한편 각종 정책, 프로그램 또는 계획 등을 사전평가(appraisal and Evaluation)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해설한 것으로서 재무부(HM Treasury)에서 발간한 “Green Book, Appraisal and Evaluation in Central Government”라는 지침서<sup>15)</sup>가 있다. 이 지침서는 1991년, 1997년에 이어 2003년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정책을 논리적 근거, 목표, 사전평가, 감독, 중간 및 사후평가, 피드백이라는 흐름으로 파악하고

15) <http://greenbook.treasury.gov.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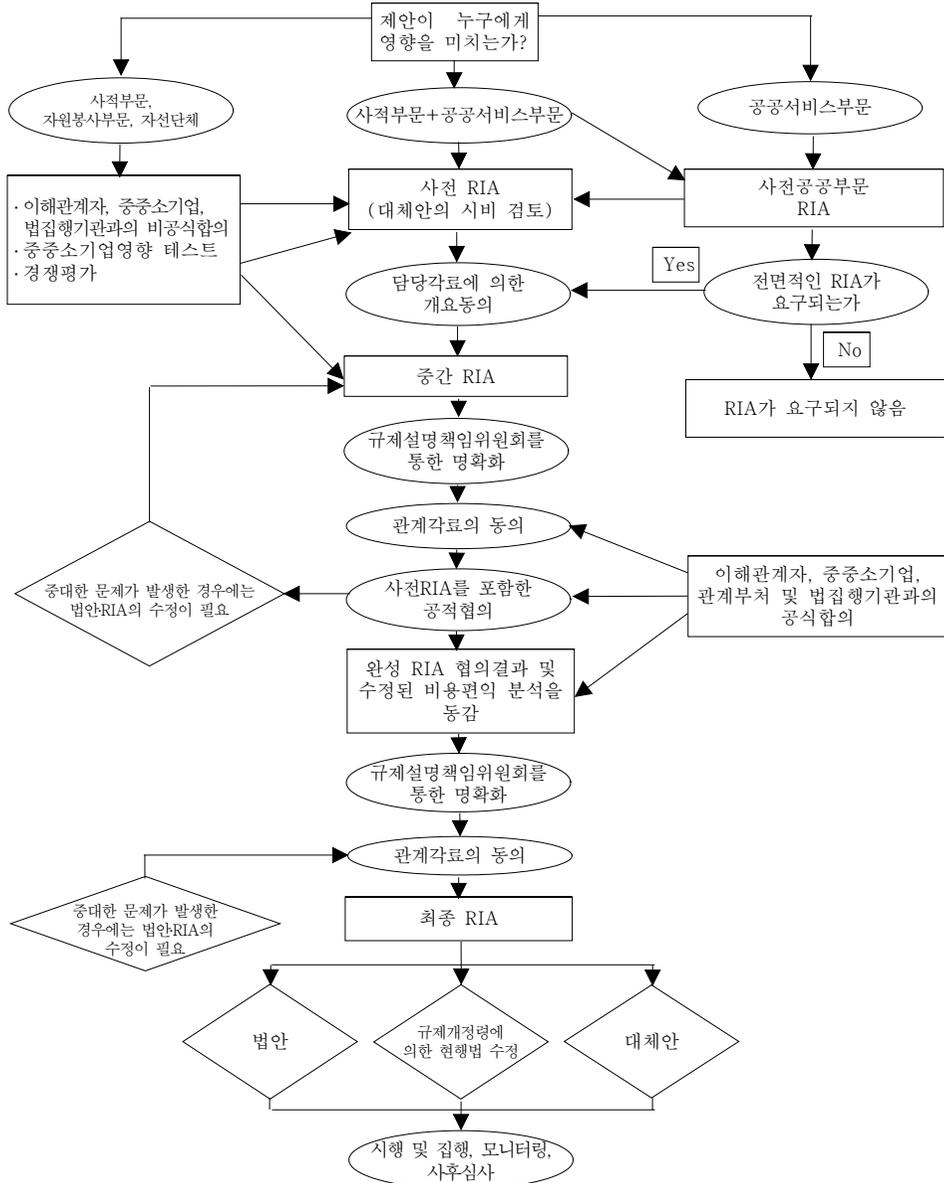
있다. 즉, 새로운 정책의 복수의 대안 가운데에서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절차와 방법,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가능한 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는 기법, 전문가와 관계와의 협의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각 부처에서는 이 지침서에 기재된 원칙에 합치하여 특정분야에 관한 보완가이드를 작성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 Ⅲ.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주요내용

영국에서는 비용부담증가 등 기업이나 자선단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 또는 규제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때에는 그 담당 부처가 사전에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공공 및 민간부문 또는 자선단체와 자원봉사부문에 대해 비용측면에서나 절약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거나 무시해도 좋은 제안들, 인플레이션을 같은 선결 공식에 의한 법정비용의 증액, 도로봉쇄 명령(road closure orders) 등은 규제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영향평가는 그 규제안이 부처의 목적 등에 비추어 왜 필요한가를 충분히 설명하고 기업 등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가를 가능한 한 수치로 분석하는 것이다. 영향은 플러스영향(편익)과 마이너스영향(비용)으로 나누어 분석되고 마지막으로 비용-편익에 의하여 순편익이 도출된다. 규제안뿐 아니라 그 대체안의 비용과 편익도 계산된다. 비용 중에는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compliance cost)이 중요시되고 있다. 여하히 바람직한 규제안이더라도 그 비용이 증대하게 되면 기업 등에 커다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려는 것이다. 규제영향평가의 중요한 점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consultation)를 도모하여 규제개혁에 있어서 합의형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개 이상의 기관에 대하여 청문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평가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에는 누가 어떠한 협의를 하여 어떠한 견해가 도출되었으며 그것을 기초로 어떻게

규제안을 수정하였는지도 언급되어 있다.<sup>16)</sup> 영국의 규제영향평가의 전체적인 흐름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영국의 규제영향평가는 연간 약 3,000건의 신법 중 중요성이 높은 약 200건이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으로서 각 부처에서 선정되고 있다.

영국 내각사무처가 마련한 규제영향평가지침서에 제시되어 있는 중요한 원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목적 및 의도한 효과

이것은 규제안이 달성하려는 의도 내지 목적을 명확화 하는 것으로서, 당해 규제에 관한 현재의 상황, 정부에 의한 관여가 없을 경우에 현재의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규제안으로서 달성하려는 성과가 무엇인지를 정의한다. ①규제안의 목적(purpose)은 지향하려는 성과를 분명하기 위하여 명확하고 집약적으로 특징적으로 언급한다. 또한 당해 정책이 영국전역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제시한다. ②배경(background)은 현재의 상황(사회적, 환경적, 평등, 경제적 문제 등)을 간략하게 제시한다. 또한 현안과 관련하여 백서(White Paper)나 입법에서 제시된 현존하는 규제나 정책을 언급하는 한편 현재의 정책을 담당하는 자 및 현재의 정책의 효과에 관하여도 언급한다. ③정부관여의 합리성에서는 EU의 지침에 따른 실행의 일환인지,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정부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 그에 대한 평가, 현재의 상황에 따른 문제가 자율적 해결되지 못하여 정부의 관여가 필요한 이유, 규제안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특별한 집단이 누구인지 등을 기술한다. 또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손해나 피해를 야기할 위험요인이거나 사태의 검토, 손해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도 포함된다.<sup>17)</sup>

---

17) 이에 관한 지침으로서 “Precautionary Principle”이 있다. 이것은 보건안전청(Health & Safety Executive)의 Interdepartmental Liaison Group on Risk Assessment (ILGRA)에서 마련한 것으로서 리스크평가라고도 한다.

## 2. 협 의

협의(Consultation)는 사전 규제영향평가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로서, 영국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있어서 국민과의 효과적인 협의가 불가결하다는 관점에서 2000년 11월에 문서에 의한 협의제도를 도입하였다. 문서에 의한 협의제도는 협의의 상대방의 부담을 경감하고 네트워크, 전자정보 등 새로운 정보과학의 발전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협의의 일반원칙은 내각사무처의 “서면에 의한 협의에 관한 실시 지침(Cabinet Office, Code of practice on written consultation, November 2000)”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협의의 시기는 정책 또는 개시하는 서비스의 계획과정에서 할 것, ②협의하여야 할 내용, 질문, 예정표 및 목적이 명시되어 있을 것, ③협의문서는 가능한 한 간결하고 솔직하게 할 것. 최대 2페이지의 요지가 있을 것, 회답, 연락 및 고충신청이 용이할 것, ④전자형태를 가능한 한 이용하고 널리 이용가능할 것, ⑤회답기한을 충분히 고려할 것, 최저기한 12주임, ⑥회답은 주의 깊고 또한 넓게 분석하고 결과는 견해를 첨부하여 가능한 한 최종결정의 이유를 명시할 것, ⑦부처는 협의를 모니터하고 평가할 것 등이다. 이 지침은 법률에 의거한 것은 아니나 문서에 의한 협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 정책결정을 공개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며, 전자형태 및 인쇄형태를 불문하고 전부 전국적 국민협회에 적용되며 모든 부처 및 기관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2001년 1월 1일 이후의 협의문서에 적용된다.<sup>18)</sup>

이러한 협의는 규제안과 관련한 행정부처와의 협의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특히 규제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행정부처간의 협의가 중요한

---

18) 2004년 1월에 이 지침의 표현을 간소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Regulatory Impact Unit, Cabinet Office, Code of Practice on Consultation, January 2004,

부분은 ①소비자 및 경쟁과 관련한 문제는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 ②정책결정에서의 과학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등과의 협의, ③소송메카니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헌법문제부(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를 거쳐야 한다.

### 3. 대안의 고려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대안(Option)을 모색한다. 각각의 대안에는 리스크, 준수 및 집행과 관련한 문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등 각종 요소를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사전적(initial) 규제영향평가에서는 최소한 세가지의 대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각의 대안에 관하여는 상세한 이행상황 및 조치계획의 개요를 기재하고 여기에는 무대안(Do Nothing Option)도 고려한다. 또한 대안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것은 EU의 제안이나 지령(Directive)도 고려하여야 한다. 리스크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리스크의 개요, 당해 리스크의 결과, 유사사례(외국사례포함)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의 변경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또한 대안에는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준수의 최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과 각각의 정책대안의 집행수단도 검토한다. 각 대안마다 가능한 의도하지 아니한 결과도 언급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아니하므로 문제를 최소화하여 정책목적을 좀 더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규제는 항상 의도된 대로 사람들의 행동양식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한다. 대안에 대한 의도하지 아니한 결과예측은 이해관계자, 다른 정부기관, 경제학이나 사회조사가, 과학자 등과의 의견교환이 매우 중요하다.

#### 4.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Costs and Benefits)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규제안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부문과 집단 즉, 기업, 소비자, 자선단체(Charity) 및 자원봉사단체의 종류를 파악하고 어느 만큼의 숫자의 조직과 직업이 포함되는가를 견적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집단에 관하여도 어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그 범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안에 의하여 이들 조직·집단에 간접비용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경우 규제안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과의 비공식협의를 초기단계에서의 평가에 필요한 사전정보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두 번째 단계는 비용과 편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①비용과 편익의 정량화(Quantification)이다.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또한 선정한 정책대안에 의하여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비용과 편익은 가능한 한 화폐 가치로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직접비용(direct costs)은 반드시 화폐가치로 표시되어야 한다.

②편익의 분석이다. 정책의 비용뿐 아니라 편익을 확인하고 정량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대개의 경우 편익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며 때로는 매우 주관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으나, 각 대안에 수반하는 편익을 무시할 수는 없다. 비용에 관하여 상세한 예측수법이 있는 한편 편익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량화수법이 없다면 발란스를 상실한 정책제안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가능한 한 편익의 정량분석을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편익평가는 우선 규제안에 의하여 어떠한 종류의 조직·집단에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하고 다음에 어떻게 편익이 획득되는지를 검토한다. 각 대안의 편익을 평가하는 데에는 규제안의 존속예정기간중에 실제로 어느 만큼의 편익이 발생하였는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간접적인 편익(indirect Benefits)을 고려하여야 한다. 편익평가를 하는 경우 당면한 편익과 직접적인 편익은 대개의 경우 명확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상황의 변화에 상응하여 행동을 변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간접적인 편익에 관하여도 가능한 전부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각 정책대안의 편익이 검토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가능한 한 화폐가치로 편익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비용분석이다.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검토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에 의하여 비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정책대안이 각각의 종류의 사업단체에 어떠한 영향을 발생시키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간접비용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규제영향평가에서의 비용과 편익의 추계평가에서는 시장개입에 의한 당면비용과 편익을 검토하여야 하나, 생산시장의 발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적인 효과에 관하여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나 시장에 대한 잠재적인 신규진입자에 대하여 규제가 부당하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기존의 경쟁자간에 규제가 왜곡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경쟁이나 소비자선택은 축소되고 또한 각 부문의 경쟁성 및 생산성은 장기에 걸쳐 저해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각 대안별로 다른 모든 추가적 비용과 간접비용에 관하여 어느 자 또는 단체가 부담하는지를 지시하면서 확인함과 아울러 가능한 한 이를 정량화하여야 한다.

④정책 및 실시비용의 조사이다. 각 규제안에 관하여 매년 정책비용(policy cost)과 실시비용(administrative cost)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정책비용은 정책목표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비용을 보는 것인데 대하여, 실시비용은 규제의 실시·시행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나타낸다. 실시비용은 규제의 관료비용이라고 하며, 예컨대 직원간의 교섭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기록을 하기 위하여 지침을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포함된다. 정책비용과 실시비용의 구분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당해분야의 경제학자와 상담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에 결정한다.

⑤그 밖에 비용편익분석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Cost and Benefits checklist)으로는 다음과 같다.

### 1. 경제적 영향

- 제안이 정부에 지출의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아니면 저축의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 제안이 상품과 서비스의 비용, 질 또는 상품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제안이 새로운 기술을 초래할 수 있는가?
- 제안이 영연방에 대한 투자 그리고 영연방 기업의 해외투자와 자국내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는가?
- 영향받는 집단 내에서 경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 제안은 일선조직의 직원배치를 포함해서 공공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가?
- 제안은 사업회사, 자선단체 그리고 자원봉사조직들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영향은 가격, 생산량, 고용 수준 또는 경쟁 관계에 일정한 형태로 영향을 주는가?
- 제안은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사회적 영향

- 제안이 건강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건강 서비스를 위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가?
- 제안이 작업장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지역사회 내의 사고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제안이 범죄율 또는 범죄 예방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범죄 처벌을 위한 새로운 형벌을 만드는가?
- 제안이 기술과 교육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 제안이 지역사회 단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역 사회에 있어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제안이 다음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또는 다음의 대상에 대해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인종 평등 - 인종평등영향에 대한 정책 평가는 2000년 인종 관계법 하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정책이 어떠한 인종 평등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RIA의 영향부문과 집단에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야 한다.**

- 농촌지역사회
- 인권
- 남녀 평등
- 장애인
- 어린이와 청소년
- 노인
- 소득 집단
- 비독립 국가
- 영국내의 특정 지역 분리

### 3. 환경적 영향

- 정책 대안이 온실가스 배출의 변화를 유도하는가?
- 정책 대안이 기후 변화의 예측효과에 대해 약점을 노출하고 있는가?
- 정책 대안이 재정적 비용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가? 또는 나쁜 경영에 대한 환경적 그리고 건강적 영향을 변화시키는가?
- 정책 대안이 대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 정책 대안이 경관 또는 도시환경의 모습에 중요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 제안은 다음의 세가지 내용을 변화시키는가?
  1. 수질오염정도
  2. 물 용출 정도
  3. 홍수위험에 대한 노출
- 정책대안이 거주지 또는 야생동물을 방해하거나 또는 보호하는가?
- 정책대안이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사람들이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과 같은 분석에는 사안에 상응하는 분석정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 분석이 투명할 것이 불가결하다. 어떻게 하여 평가결과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초가 된 분석의 전제조건을 설명함과 아울러 불확실한 요인에 의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비용편익의 범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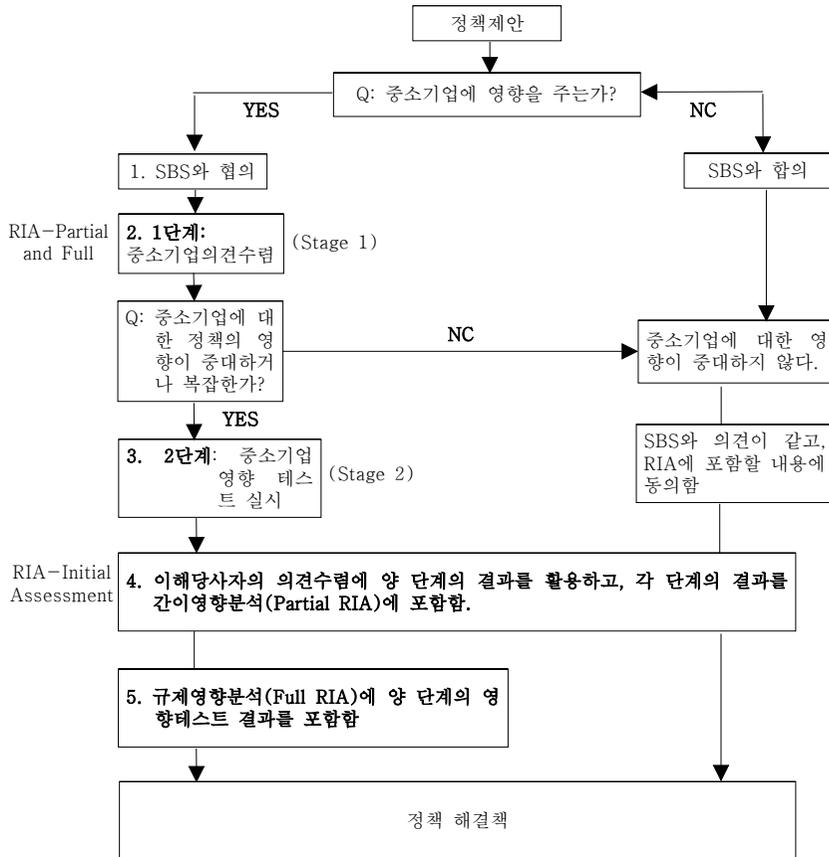
## 5. 중소기업영향테스트

공공부문을 제외한 모든 제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에는 중소기업영향테스트(Small Firms Impact Test : SFIT)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부담은 누적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에 있으나, 대체로 중소기업은 규제에 순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반비례적인 규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도에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중소기업영향테스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이 테스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적어도 250인의 상근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sup>19)</sup> 중소기업

19) 이 중소기업영향테스트의 주대상은 규제순응에 필요한 자원을 거의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10인 이하의 사업장이며 이러한 사업장이 영국의 경우 전체 사업장의 95%를 이루고 있다.

업영향테스트는 다음의 두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표 1】 중소기업영향테스트 개관



(1) 제1단계 : 중소기업영향평가테스트의 실행

이는 제안된 정책이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중소기업이나 그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조직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여야 한다. 의견수렴의 초기단계에 정책제안자는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고

자하는 목표를 중소기업에 설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견수렴은 최소한 주요 중소기업조직과의 협의는 물론 필요하다면 업종별조직과도 접촉하여야 하며, 일정수의 중소기업과 직접 접촉도 하여야 한다.<sup>20)</sup> 제1단계의 테스트에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별다른 중요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Service)과 협의를 거쳐 사전적 규제영향평가에 그 내용을 수록한다. 반면 중소기업에 중요하거나 복잡한(significant or complex)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제2단계로 넘어간다.

## (2) 제2단계 : 정책내용과 대안에 관한 세부적 검토

이 단계는 정책내용에 관하여 좀 더 세부적이고 철저한 협의가 진행된다. 여기에서 고려하는 주요사항으로는 ①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의 누적적 효과, ②규제가 없는 대안, ③의도하지 아니한 정책의 부작용, ④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대우, 예컨대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책의 일정부분 또는 전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 등이다. 이 제2단계의 영향테스트의 결과에는 ①협의를 한 기업에 관한 사항(규모, 부문, 입지), ②협의를 한 중소기업조직 또는 업종별 조직, ③접촉방법(전화, 이메일, 대면방법), ④제1단계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중소기업에 중대한 영향이 발견되었는지 발견되었다면 집중검토집단을 구성하였는지 구성하였다면 몇 개를 구성하였는지 등에 관한 요약, ⑤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발견된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기재한다.

---

20) 중소기업에 대한 의견수렴은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서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Service)에서는 중소기업영향평가테스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SBS는 정부기관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정책이 특정부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때 그 부문의 테스트에 적합한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 6. 경쟁평가

경쟁평가(Competition Assessment)라 함은 규제가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사전에 규제의 경쟁제한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이 경쟁의 촉진에 의한 사회후생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규제를 경쟁중립적 내지 촉진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경쟁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경쟁평가에 즈음하여 규제입안자는 특히, 초기단계에서는 시장의 정확한 파악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행정기관의 경제전문가, 규제영향실 또는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 : OFT)에 조언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sup>21)</sup>

경쟁평가는 두가지의 단계(two-step process)로 이루어진다. 즉, 규제영향평가의 초기단계에서는 경쟁필터테스트(competition filter test)의 형식을 취한다. 이 경쟁필터테스트를 위하여 다음의 9개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여 그 결과 아니오(NO)가 많으면 규제영향평가 가운데 단순한 평가(영향을 받는 시장의 확인, 시장의 성질, 9개의 질문에 대한 짧은 회답)를 기재하면 되나, 반대의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계인 상세한 경쟁평가가 필요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대체안(자주규제, 준규제, 정보·교육캠페인, 시장활용형의 경제적 수단 등)을 포함한 모든 정책제약요소에 동테스트가 적용되게 된다. 한편 경쟁필터테스트는 규제영향평가에 있어서 경쟁평가를 비교적 용이하게 하도록 평가비용의 절감이라는 점에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쟁필터테스

21) 경쟁평가에 관한 상세한 것은 OFT의 경쟁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Office of Fair Trading Guidelines for competition Assessment)에 제시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은 서문, 경쟁의 중요성(제2장), 정부정책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제장), 규제안의 경쟁영향평가(제4장), 세부평가(제5장), 추가정보원과 평가작업지원구조(제6조) 등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쟁평가 가이드라인은 세련된 내용, 평이한 해설로 되어 있으며 경쟁의 의의, 정부정책이 경쟁영향을 부여하는 구조, 경쟁평가의 방식을 거의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트는 시장, 준법비용의 비대칭성, 시장구조, 진입장벽, 기술혁신 및 기업활동의 자유도에 부과하는 일반적인 제약을 문제시하고 있다.

(1) 제1단계 ; 경쟁필터테스트

【경쟁영향평가 질의서】

질 문	대 답 예/아니오
Q1 : 새로운 규제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어떤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10% 이상 변화하는가?	
Q2 : 새로운 규제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어떤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0% 이상 변화하는가?	
Q3 : 새로운 규제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시장 점유율 크기가 가장 큰 순서의 1.2.3위 기업 시장 점유율 합이, 전체 시장점유율의 50% 이상 차지하는가?	
Q4 : 새로운 규제가 다른 기업과 두드러지게 어떤 특정 기업에게 심각한 손실을 유발하는가?	
Q5 : 새로운 규제가 시장의 구조나, 기업의 수 또는 기업의 규모를 변화시킬 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Q6 : 새로운 규제로 인해, 현재 존재하는 또는 잠재적으로 시장참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많은 준비비를 감수해야 하는가?	
Q7 : 새로운 규제로 인해, 현재 존재하는 또는 잠재적으로 시장참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규제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고비용을 들여야 하는가?	
Q8 : 규제대상이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분야인가?	

질 문	대 답 예/아니오
Q9 : 새로운 규제가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산정하거나 제품의 품질, 수량, 위치 등을 정하는데 제한을 가하는가?	

위의 9가지 질문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1문과 제3문은 시장지배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문항으로 되어있다. 제4문과 제5문은 규제준수비용이 기업에 비교하여 특히, 중중소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가져오지 않는가를, 또한 합병·퇴출 등을 통하여 기업규모, 기업수(시장구조)에 변화를 발생하지 않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문항이다. 어느 경우에도 경쟁을 감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제6문과 제7문은 진입장벽의 형성여하를 신규진입자 내지 잠재적 진입자에 부과되는 설립비용과 조업비용의 양면으로 검토하기 위한 문항이다. 나아가 제8문은 IT분야 등 기술혁신이 급격한 분야에서 규제가 그 흐름을 제한하지 않도록 고려한 것이며, 제9문은 규제가 상품의 가격, 제조방법·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문항이다.

동 테스트에서는 경쟁에 대한 영향의 유무에 관하여 예/아니오로 명확하게 답변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각 질문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부기할 필요가 있다. 아니오(No)항목이 과반수를 넘는다면 경쟁평가는 이 제1단계에서 종료되나, 예(Yes)의 항목이 과반수를 넘게 되면 제2단계로 진행한다.

## (2) 상세평가

위의 경쟁평가테스트를 통과한 경우 상세한 경쟁평가는 규제에 영향을 받는 시장의 확정, 당해시장의 경쟁현상에 관한 분석, 경쟁영향평가라는 단계로 진행된다.

① 규제에 영향을 받는 시장의 확정

경제적 시장(economic market, 제품시장, 지리적 시장)의 확정에서는 세련된 접근방식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수요 및 공급측면의 대체성으로부터 시장의 확정문제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며, 이 점에서는 사고 실험(thought experiment)으로서의 가상독점사업자테스트가 가장 적합한 수법이다. 따라서 그것을 활용하여 제품시장, 지리적 시장, 관련시장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경쟁의 현상분석

여기에는 세가지 측면에 비추어 분석항목을 열거할 수 있다. 첫째, 경쟁의 수요·공급요인 측면이다. 우선 공급측면에서는 중요한 생산요소 내지 중간투입재(토지, 자본, 노동, 원자재)에 희소성이 없는가, 교통·유통비용이 많은 상황은 아닌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의 균형은 도모되고 있는가 등이 중요한 분석항목이다. 다른 한편 소비측면에서는 구입상품의 중요성, 구매의 정기성, 계절성, 선호도, 탐색비용(search cost, 제품의 가격, 품질, 지리, 특성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구매반환가능성, 반환비용, 제품의 질에 관한 정보 및 제품차별화 등에 관한 조사가 중요한 분석항목이다. 둘째, 경쟁 프로세스측면이다. 여기서는 우선 전체시장규모의 추계, 각주요기업의 시장규모의 측정 그리고 시장지배력의 판정이 중요한 조사과제가 된다. 또한 광고·선전비용, 교환비용, 인허가 내지 특허비용 등의 수준, 근로계약의 유연성 등 진입·퇴출장벽을 형성하는 제요인 또한 경쟁의 활성화(가격동향, 합병기업의 유무, 진입·퇴출상황, 제품의 차별화, 기술혁신의 정도 등)가 분석되어야 한다. 셋째, 시장결과의 측면이다. 여기서는 경쟁이 가격의 균일성이나 하락을 가져오고 있는가, 기업은 품질, 다양성, 지리, 신뢰성·안전성 및 고객의 요구에의 대응 등에서 경쟁하고 있

는가 등이 중요한 분석항목이 된다.

### ③ 경쟁평가

규제가 경쟁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는 규제영향평가에서 전부 실시되어야 하며, 정책입안자는 규제가 세가지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수량으로 명확히 할 것인지를 제시한다. 또한 전체적인 경쟁평가를 종합하기 위하여 경쟁의 세가지 측면의 결합결과로서 현행시장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가, 진입·퇴출장벽이 높지 않은가, 암암리의 결합 등으로 경쟁력이 소멸되고 있지 않은가, 제품의 다양성이 없게 되거나 소비자선택의 폭이 좁아지지 않은가,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는가 등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경쟁프로세스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규제는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증강하고 소비자의 복리후생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7. 집행, 제재 및 모니터링

### (1) 집행

준수되지 않는 규제는 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일반에게 널리 오랜동안 지속된다면 규제수단의 가치를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규제안을 입안하는 각 단계에서 어떻게 한다면 규제가 준수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해가 되지 않은 규제나 대상으로 하는 집단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불가능한 조건을 부과하는 규제는 준수되지 않게 된다. 정책입안자는 대상으로 하는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러한 이해를 활용하여 충분한 정보에 의거하여 규제안의 기획입안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규제의 집행방법에 관한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정책목표와 리스크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비용과 그 경우의 준수비용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각각의 대안을 집행하는데 다른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에 의한 집행을 최소화하거나 집행을 하지 않은 규제도 고려한다.
- 각 대안에서 규정한 집행방식의 영향을 검토하고 강제의 단계를 모색한다. 각각의 집행방식에 대한 비용과 영향을 분석한다.
- 집행기관과 정책에 영향을 받는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한다.
- 정책이 까다롭거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일 경우에는 집행의 유연성을 고려한다.
- 현존하는 관련정책의 집행강도를 측정하고, 집행강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한다.
-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강제조치를 추정하지 아니한다.
- 집행의 단계는 가능한 한 강도가 낮은 것을 고려한다. 집행단계는 불복종의 가능성 및 위험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판단한다.
- 제안된 정책이 기존의 형식, 시스템 또는 조사/제재체제 및 집행기관을 활용하여 시행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제안된 정책이 현재의 집행수단을 간소화할 수 있는 여지도 검토한다.
- 목적 및 의도되는 효과부문에서 각 대안과 관련한 리스크를 검토한다. 이 부문에서 강제의 단계에 영향을 미칠 리스크에 관하여도 검토한다.
- 리스크를 고려한 접근방식을 채용한다. 불복종의 리스크가 낮다면 강제를 최소화하거나 불복종의 리스크가 높다면 그것을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
- 정책의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자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예컨대, 어떤 기업에 대하여 규제를 감시할 집행공무원 대신 소비자나 서비스이용자에게 당해 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이다.
- 적극적인 집행방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절차에 관하여 합의를 하거나 인적자원예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초기단계에서 집단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집행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집행책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권한주체간의 조정을 검토한다.

• 새로운 집행기관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기관이 새로운 제안을 집행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한다. 새로운 기관의 활동은 현존하는 기관의 활동을 적절하게 통합할 필요가 있다.

(2) 제 재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sanction)의 적절한 정도와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공정하고 효과적인 제도체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층적인 수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우선 규제준수를 적극적으로 보증하는 것을 지향하는 비형사적 제재를 검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의도와 손해리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적 제재를 전면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예방적 통제(preventative control)를 위한 행정조치, 예컨대 허가제, 등록제 또는 개선명령, 정지통보, 금지통고와 손해배상수단 또는 억제책으로서의 민사벌이나 법정벌금의 활용이다. 그리고 이들 수단 단독으로 효과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벌을 채용한다. 다만,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sup>22)</sup> 그리고 제재를 두는 경우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정하고 신속하며 독립된 이의제기 절차를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sup>23)</sup> 아울러 제재에 관한 제안은 인권법(Human Rights Act)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규제의 집행체제가 효과적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규제안이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데

22) 형사벌의 신설 등에 관한 것은 내무부(Home Office)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형사벌의 신설은 경찰과 법원의 업무량을 증대시키고 결국 법적 구조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3)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것은 헌법문제부(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정보가 정책입안과정에 피드백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대안에는 모니터링절차에 관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항목으로는 특징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관련성 및 시의성(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and Time-Bound : SMART)을 고려한다.

#### (4) 검사 및 형식부담의 경감

검사(Inspection)에서는 특히, 다른 집행기관과의 공조를 통하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당해 규제안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에게 보다 덜 부담을 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검사를 실행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형식부담의 경감에서는 기업으로부터 새로운 정보의 요구를 할 것인지의 여부, 현재의 정보요구에서 새로운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현재의 형식에 추가되는 것이 있는지의 여부, 제안이 현재의 정보요구를 경감하거나 단순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형식부담의 경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정보요건

- 정보는 실제로 필요한가, 새로운 형식이 요구되는가
- 다른 곳에서 정보가 입수가능한가, 예컨대 정부의 다른 부서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 정보를 수집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가
- 정보는 얼마나 빈번하게 요구되는가, 요구시기는 기업체 자신의 내부적 정보수집절차와 바로 연계되는가
- 정책의 변경은 기존의 정보요구를 단순화하거나 현재의 정보요구를 감소시키는가

아울러 형식의 설계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모든 질문은 명료하고 쉬운 영어(plain English)로 표현되고 있는가
- 형식이 사전에 검토한대로 적절한가
- 형식은 온라인으로 종료될 수 있는가
- 그것은 합리적인 형식인가
- 표준적인 정의가 사용되고 있는가. 이것은 기업을 지원하고 정부 간의 정보공유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한다.
- 형식에 완료시점을 포함하여 표현할 수 있는가
- 향후 사용자를 위하여 현재의 이해관계자 관련집단에게 사전에 테스트할 수 있는가
- 형식에 관하여 이해관계자 및 집행기관에게 충분한 안내가 주어졌는가

## 8. 이행 및 집행계획

수립된 각 대안에 대하여 실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모든 새로운 규제는 원칙적으로 12주의 실시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실시 및 추진계획의 작성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추진목적 및 추진성과를 명확히 한다.
- 당해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된 경우 성공요소를 명확히 정의하고, 의도한 목적대로 효과적으로 실시된 경우 모니터링 요소를 명확히 정의한다.
- 정책의 실시와 관련된 자 및 영향을 받은 자로 생각되는 자와의 협의
- 그러한 영향에 따른 계획의 변경가능성
- 실시를 위한 기간 및 주된 이정표(key milestones)의 작성
- 리스크평가 및 관리

- 실시 및 추진주체의 고려, 개입이 예상되는 다른 정부부처 또는 공공부문과의 의견교환
- 필요한 자원 및 비용의 측정. 필요한 기술 및 경험이 활용될 수 있는지, 이미 계획되었거나 최근에 추진된 것과의 중복성 내지 연계성의 검토
- 영향을 받은 자에게 취한 조치의 검토, 예컨대, 정보유지, 형식의 완료, 경험 또는 자격의 제공
- 당해 규제안이 어떻게 준수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고려한다.
- 필요로 한 여하한 형태의 제재수단이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가능한 한 조기에 개발한다.

## 9. 사후검증

사후검증(Post Implementation Review : PIR)은 실시된 규제가 의도된 효과를 가져왔는지 또한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사후검증은 정책 그 자체의 효과를 심사하거나 의도된 정책이 여전히 바람직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입법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일몰조항(sunset clause)의 도입가능성을 모색하는 것도 유용하다.

## 10. 요약문 및 추천문 작성

전체적인 규제영향평가서가 완성되면 이를 요약한 요약문을 작성하며, 특히 여기에는 비용과 편익에 관한 표, 대안의 비교방법 등을 제시한다. 결론부분에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기술하는 한편 다른 대안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부록으로 상세한 정보를 제시한다.

## 11. 선언 및 공식발표

제안이 정부의 정책으로 승인되면 관계 장관은 규제영향평가서에 서명한다. 장관의 서명에 의하여 최종적인 규제영향평가서로서 확정된다. 정책이 다수부처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무장관이 규제영향평가서에 서명한다(Declaration). 규제영향평가서에는 전부 질문과 의견을 위하여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최종 규제영향평가서는 해당부처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사본을 의회도서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규제영향평가서는 중요법안, 기타 법안, EU법안의 전부에 관하여 이들을 의회제출시에 동시에 공표하여야 한다(Publication).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즉, 정부법안(Government Bill)의 경우 규제영향평가의 개요서가 법안의 제안이유설명서의 일부분을 이룬다. 이것은 비용과 편익에 관한 중립적인 설명이어야 하며, 정책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규제영향평가 종합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하여도 언급되어야 한다. EU법안(European Legislation)의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제안이유설명서에 규제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규제영향종합평가서의 준비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설명서에 초기평가서를 첨부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규제영향평가서를 완성하여 첨부한다. 규제영향평가서의 작성이 필요한 의원제출법안(Private Members' Bill)의 경우에는 제1독회에 지정된 제2독회의 개최일까지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하위법령(Statutory Instruments)의 규제의 경우에는 규제영향평가서가 입수가능한 곳, 입수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하여 설명서 가운데 언급되어야 한다.

## 제 2 부

### 규제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목 차

<b>RIA(Regulatory Impact Assessment) 실시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b> .....	55
<b>규제영향평가 개관</b> .....	57
<b>보완적 단순화 : 잠정적 가이드</b> .....	68
<b>단계별 가이드(Step-by step guidance)</b> .....	7
1. 제안서의 표제(Title of proposal) .....	73
2. 목적과 의도한 효과(Purpose and intended effect) .....	73
3. 협의(Consultation) .....	77
4. 대안(Options) .....	79
5. 비용과 편익(Costs and benefits) .....	85
영향받는 부문과 집단 .....	86
비용 편익 분석 .....	88
정량화 .....	90
편익에 대한 분석 .....	92

비용 분석 .....	94
정책 비용과 행정 비용 .....	95
비용과 편익의 범위 .....	96
초과 시간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 .....	100
가설에 대한 검증 .....	100
비용과 편익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102
비용과 편익에 대한 요약 .....	102
RIA 비용과 편익 점검표 .....	103
6. 중소기업 영향심사(Small Firms Impact Test) .....	106
7. 경쟁평가(Competition assessment) .....	108
8. 집행, 제재 및 감시(Enforcement, sanctions and monitoring) ..	116
9. 이행 및 집행계획(Implementation and delivery plan) .....	124
10. 이행이후의 심사(Post-implementation review) .....	127
11. 요약 및 추천(Summary and recommendation) .....	131
12. 선언과 공식발표(Declaration and publication) .....	132
<b>추가 정보(Additional Information) .....</b>	<b>Ⅴ</b>
규제영향평가 순서도(RIA flowchart) .....	140
규제영향평가 점검표(RIA Checklist) .....	141
규제영향평가 템플릿(RIA Template) .....	145
초기 공공부문 규제영향평가 가이드(Initial Public Sector RIA Guidance) .....	147

초기 공공부문 규제영향평가 템플릿(Initial Public Sector RIA Template) .....	155
정책 확인(Policy clearance) .....	158
유럽 제안(European proposals) .....	163
유용한 문의처(Useful contacts) .....	166

규제영향평가 가이드라인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Guideline)

2007.1

Cabinet Office

## RIA(Regulatory Impact Assessment) 실시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RIA는 유럽 또는 영국을 불문하고,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자선단체(charities), 자원봉사 영역(voluntary sector), 중소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변경에 대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RIA는 정책에 착수하거나, 유럽이 제안한 안건들(proposals)에 대해 위원회(Commission)가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귀하가 해야 할 조치들 가운데 최우선순위에 놓여져야 한다. 이것은 정책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다. RIA는 정책변경에 따른 영향과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선택의 범위 등에 관한 분석에 있어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정책이 공공 서비스부문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전체 RIA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예비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예비평가 결과 5백만파운드 이상의 정책비용이 들 것으로 나타나면, 본 가이드에 기술된 RIA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을 것이다.

RIA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RIA 템플릿, RIA 체크리스트, Top Tips 리스트 등은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 **부처 선진규제실(Departmental Better Regulation Units)**

#### **- 누가 나의 BRU인가?**

RIA를 시작할 때, BRU가 반드시 첫 번째 기항지가 되어야 한다. 각 정부부처는 BRU를 두고 있다. BRU는 무수히 많은 RIA들을 검토하고

RIA 절차에 대해 생기는 의문들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BRU에 속하는지에 대한 문의는, BRE 020 727 2185로 문의하라.

### 상세한 정보

RIA에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RIA 사이트의 **Overview** 섹션을 참조하라. 본 섹션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려줄 것이다.

- 규제영향평가는 무엇인가?
-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자는 누구인가?
- 규제영향평가가 갖는 이점은 무엇인가?
- 규제영향평가를 시작해야 시기는 언제인가?
- 사전, 중간, 전체/최종적 규제영향

## 규제영향평가 개관

### 규제영향평가란 무엇인가?

규제영향평가(RIA) 절차는 정책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다. RIA는 정책변경에 따른 영향과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선택의 범위 등에 관한 분석을 위한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것은 포괄적이고 유연한 수단으로서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 일체의 모든 규제형태 - 공식 입법(formal legislation), 실행지침(Code of Practice), 정보캠페인(information campaigns) 등
-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범위 -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 영향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문 - 기업, 공공부문, 자원봉사영역 기타 그룹

RIA는 선진적 규제방식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규제하고, 이때에도 제기된 리스크와 비례성(proportionate)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제하며, 가능한 한 어느 상황에서도 규제철폐와 규제단순화를 이루려는 정부의 목적을 지원한다. 정부의 모든 정책제안들은 선진규제TF(Better Regulation Task Force : 규제문제들에 대한 권고를 위해 정부가 구성한 독립기구)가 고안한 다음의 바람직한 규제 5원칙(the five Principles of Good Regulation)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리스크에 대한 비례성(proportionale)
- 장관들과 의회, 사용자와 일반인들에 대한 책임성(accountable)

- 예측가능성을 통해 일반인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일관성(consistent)**
- 공개적, 간소성, 사용자 친화적인 **투명성(transparent)**
-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제에 초점을 맞춘 **목표의 명확성(targeted)**

RIA에 대한 우수성은 선진규제TF와 국립회계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에 의해 정기적으로 평가된다. 이 기구들은 또한 심의중인 정책 대안들(policy options)과 관련하여 수집된 증거자료와 정보를 설명함으로써 의회에서의 논의에 이용된다.

RIA는 착수하고자 하는 정책 문제와 그 시행하기 위해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심의중인 대안들은 반드시 ‘무(do nothing)’ 대안과 실행지침, 산업기준(industry standards), 혹은 인증제도(accreditation schemes)와 같은 비입법적(non-legislative) 대안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바람직한 RIA는 ‘목적은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것이다.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주무장관은 최종 RIA에 다음의 내용을 공식 선언하고 서명해야 한다.

**‘나는 규제영향평가를 숙지했고 비용을 정당화하는 편익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자는 누구인가?

RIA는 유럽 또는 영국을 불문하고,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자선단체, 자원봉사영역, 중소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모든 정책

## 변경에 대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RIA는 대안이 고려중이거나, 비용이나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 이것은 1차적 입법(primary legislation) 및 하위법령(secondary legislation)의 대체법안 이용에 만들어진 모든 변경들은 포함한다. 따라서 1차적 입법이 하위법령으로 이어질 골격법(framework Act)일 경우에는, RIA는 1차적 입법과 이에 이은 각각의 하위법령 모두에 실시될 필요가 있다.

RIA는 규제제안의 영향가능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안이 단지 몇 안되는 기업에 한해 영향을 미치거나, 수적으로는 많지만 그 영향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또는 비용과 편익의 정도가 적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RIA는 상당히 단축될 수 있다. 영향의 정도가 상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데이터와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심지어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는 없고 일정 종류의 재배열(비용과 편익의 교환이나 '이전'이 있는 경우)한 경우라도, 그 효과는 RIA를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공공서비스에만 영향을 미치는 규제제안의 경우, 초기 공공부문(Initial Public Sector) RIA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유용한 분석방법을 제공함은 물론, 전체 RIA(full RIA)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초기 공공부문(Initial Public Sector) RIA 가이드에서 이용가능하다.

다음의 경우는 RIA를 요하지 않는다 :

- 공공 및 민간부문 또는 자선단체와 자원봉사부문에 대해 비용측면에서나 절약측면에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거나 무시해도 좋은 제안들

- 인플레이션을 같은 선결 공식에 의한 법정비용의 증액
- 도로봉쇄 명령(road closure orders)

### 규제영향평가가 갖는 이점은 무엇인가?

RIA 절차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는 다음 사항에 조력할 것이다.

- 제안이 갖는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
- 제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고려하는 것
-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안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
- 협의작업이 의미 있고 가능한 한 폭넓은 이해관계인들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
- EU에서의 협상을 주지하는 것
- 비용 이상의 편익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 특정 그룹이 불균등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 규제영향평가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RIA 순서도(flowchart)는 RIA가 정책결정과정과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지는 보여준다.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주지받은 즉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초기 RIA에 대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온라인상의 단계별 RIA 가이드(step-by-step RIA Guidance)를 따라 진행해야 한다. 또한 RIA 과정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경제학자, 통계학자, 과학자 등의 전문가들에게서 자문을 구해야 한다.

초기 RIA(Initial RIA)는 장관들에게 제출하는 정책 대안개진과 함께 취급될 수 있다. 초기 RIA는 또한 외부기관(예를 들어,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초기 비공식적 사태추이를 살피는 과정에서 유용한 기본틀을 제공한다. 초기 RIA는 보다 충분한 정보가 수집될 필요가 있는 영역을 확인함으로써 초기 RIA의 실시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다.

RIA는 또한 녹색(Green Paper)단계에서 공식 공개협의문서와 함께 발표되어야 하고, 정책 변경을 위해 위원회의 확인을 요구할 때는 내각의 문서(예를 들어, White Paper의 발행)가 첨부되어야 한다.

**최종 RIA(Final RIA)**는 법률과 함께 의회(the House)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고, 소속 부서의 웹사이트에 입법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공식 발표되어야 한다.

**충분한 RIA 없이는 장관의 공동합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기업에 주요 신규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모든 규제제안들은 수상(Prime Minister)이 지휘하는 **규제책임패널(Panel for Regulatory Accountability)**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주요 면제대상이 비상입법(emergency legislation)과 통상의 예산집행과정에서 대법관이 심의중인 조세관련 문제들이다. 패널이 고려할 사항은, 해당 제안이 장관의 충분한 승인을 받아 승급되기 전에, 내각사무처 신전규제국(Cabinet Office Better Regulation Executive)이 동의한 제안에 대해 철저히 실시된 RIA에 기초를 둔다. 패널은 관련 부서의 이전 규제 실적과 핵심 사업부문 전반에 대한 규제부담 등을 고려한다.

**유럽**의 경우, 초기 RIA는 규제제안이 채택되기 이전에 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안내는

RIA 가이드의 유럽제안섹션(European proposal section)에서 이용가능하다. RIA는 협상라인에서 장관의 공동합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고, 의회의 조사를 위해 제출된 정책제안 취지설명서(Explanatory Memorandum)를 첨부해야 한다. RIA는 지침서의 이행을 위한 대안을 고려할 때도 제출되어야 한다.

양질의 RIA는 정책입안 과정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할 것이다. 처음부터, 지명된 개인은 RIA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누가 관련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바람직한 첫 번째 단계로는 **선진규제실(Better Regulation Unit, BRU)**과 함께 심의 중에 있는 정책분야를 통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완결된 RIA는 정부의 공개성과 투명성에 관한 책무의 일환으로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1년 1월부터 발표된 RIA는 RIA 웹사이트의 부문별 리스트 RIA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과정동안 함께해 온 공무원 등 관련자들의 이름과 함께,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최근 RIA 한부를 입수할 수 있다. 반드시 부서의 웹사이트에서 중간(partial) 및 최종 RIA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

### 사전, 중간, 전체/최종 규제영향평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RIA를 시작함으로써 정책입안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 RIA 절차는 연속성을 가지며 정책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 사전 RIA(Initial RIA) -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즉시 본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공공서비스 부문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일 경우, 사전공공부문 RIA(Initial Public Sector RIA)를 실시해야 한다.

- 중간 RIA(Partial RIA) - 본 절차는 사전 RIA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이는 협의를 구하기 이전에 제출되며, 협의기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전체/최종 RIA(Full/Final RIA) - 본 절차는 중간 RIA상의 정보와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협의심사에서의 반응들과 이것이 어떻게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구체화한다. 협의를 거친 후의 공동합의를 얻기 위해 전체 RIA를 준비해야 하고, 이것이 법적 제안이라면 의회절차(Parliamentary process)를 대비해 준비해야 한다.

RIA는 가능한 한 초기(as early as possible)에 경제학자, 통계학자, 과학자 등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충분한 증거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조사활동을 위임해도 좋다. RIA를 철저히 계획하는 것(완성과 이행에 있어서의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은 성공적인 정책을 보장하는데 중요하다.

## 사전 RIA

사전 RIA는 관계 부처 장관에게 규제제안에 동의를 구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원칙적으로 제안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에겐 발생 가능한 리스크, 편익, 비용에 대한 최선의 예상수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전 RIA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높은 수준의 정책 목적 - 정책이 달성하길 원하는 것 - 에 대한 명확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 쟁점을 기술하고, 가능한 한 설명하고자 하는(want to address) 쟁점의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 규제의 범위와 ‘무대안(do nothing)’을 포함한 비규제적 대안을 확인해야 한다.
- 각각의 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관련 부문에 대한 기존 요건들과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 불균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부문과 그룹 등 누가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 비용과 편익에 대해 이미 인식하고 있는 바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 의도하지 않았으나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모든 결과들을 식별가능하게 해야 한다.
- 영향 받을 수 있는 시장을 확인하고, 일체의 모든 발생 가능한 잠재적 경쟁문제들을 경고해야 한다.
- 해당 정책의 준수를 어떻게 보장하고, 어떻게 그것을 심사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 중간 RIA

중간 RIA는 사전 RIA를 토대로 한다. 중간 RIA는 내각(Cabinet), 내각위원회(Cabinet Committee), No 10, 또는 기타 이해관계 있는 장관들로부터의 공동 합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제안들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공개 협의를 수반해야 한다. 이는 보다 많은 토의, 데이터 수집, 그리고 비공식적 협의들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과정을 통해, 제안자는 비용과 편익의 정도를 보다 세밀히 검토할 것이다. 또한 대안을 준비하여 그 완성과 이행, 집행, 준수, 그리고 감독에 대한 제안자의 생각을 정리할 것이다. 본 절차가 만일 전체 RIA 단계에 까지 남아있다면 이러한 쟁점들을 의미 있게 다루기에는 너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 중간 RIA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정책목적과 쟁점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의도한 쟁점의 범위를 기술하고 명시해야 한다.
- 규제적 및 비규제적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 각각의 대안들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관련 부문에 대한 기존 요건들과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 각각의 대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완성도와 이행 계획들을 포함해야 한다.
- 불균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부문과 그룹 등, 누가 영향을 받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고 각 대안과 관련한 주요 리스크들을 검토해야 한다.
- 의도하지 않았으나 발생가능한 잠재적인 모든 결과들을 식별가능하게 해야 한다.
- 중소기업 영향 테스트(the Small Firms Impact Test)의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 각각의 대안에 대해 예상되는 경쟁효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기재된 경쟁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각 정책 대안에 대한 집행, 제재, 감독상의 대안들을 고려하고 제기된 리스크요소들이 어떻게 각 대안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 전체/최종 RIA

전체 RIA는 중간 RIA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한다. **협의결과와 철저한 정보 및 분석을 토대로 RIA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한 권고 대안에

대한 완성이후에 있을 심사 계획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이행 및 집행 계획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책 대안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어떻게 이행되고 심사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야 명확한 권고안을 첨부해 전체 RIA를 장관들에게 제출할 수 있다.

**책임있는 관계 장관의 서명을 받고 의회도서관에 비치될 때 비로소 최종 RIA가 된다.**

전체 RIA는 의회에 제출될 때 법률을 수반할 것이다. 이는 또한 관련 부서의 웹사이트에 공식 발표되어야 한다.

유럽입법(European legislation)의 완성은 보통 영국의 입법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관련부처 장관은 전체 RIA에 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체/최종 RIA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정책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 의도하는 쟁점의 범위를 기술하고 명시해야 한다.
- 최종까지 남은 대안들에 대해 각각의 대안이 어떻게 기존 요건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대안들과 관련한 주요 위험 및 이것이 완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 불균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부문과 그룹 등, 누가 영향을 받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중간 RIA에서 논의한 각 대안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 ‘기타’ 비용과 편익 - 예를 들어, 공공부문, 기업, 자선단체, 그리고 자원봉사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개인, 그리고 경제적, 사회

적,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한 경제전반에 대한 비용과 수익 - 을 개별적으로 고려하고 기록해야 한다. 기업, 자선단체, 자원봉사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개별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 누가 혹은 어떤 부문이 각 대안에서 발생한 비용과 편익을 부담하는지를 정리해야 한다.
- 의도하지 않은 모든 결과들과 부차적인 비용을 언급해야 한다.
- 중소기업 영향테스트(Small Firms Impact Test)의 상세한 내용들과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Service)에서 언급한 모든 의견안들을 기재해야 한다.
- 각 대안이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영향과, 중소기업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수단들을 정리해야 한다.
- 여과심사(filter test)의 결과에 따라서, 간단한 혹은 상세한 경쟁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제시된 각 대안을 준수하도록 하는 집행계획안을 세워야 한다.
- 제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가이드를 포함하여 각 대안이 가져올 변화들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정책의 감독방법에 대해 설계해야 한다.
- 협의에서 얻은 결과, 서로 다른 부문, 또는 기업들로부터 받은 반응을 정리하고, 협의를 거친 이후의 권고사항, 비용 등 RIA 과정에서 통해 이루어진 모든 변화들을 설명해야 한다.
- 제안자가 추천하는 대안에 대해 그 완성과 이행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기재해야 한다.
- 완성이후에 있을 심사에 대해 상세한 계획을 기재해야 한다.
- RIA의 요소들, 특히 비용과 편익에 관한 분석에서의 판단근거를 제시하며 우선 대안(PREFERRDE OPTION)을 추천해야 한다.

**보완적 단순화 : 잠정적 가이드(Compensatory Simplification : interim guidance)**

1. 관련 부서들은 새로운 규제를 창안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존 요건들을 단순화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 목적은 새로운 조치들(measures)을 만들고 기존 조치들을 축소하는 것간의 바람직한 균형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것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할 새로운 기본적, 규제개혁 패키지의 핵심 부분이다.
2. 모든 주요 제안들에 대해 상쇄적 단순화 조치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단순화 계획이 대체로 가능한 한 어디에나 새로운 제안과 동등하다는 것은 중요하다. **규제책임패널(Panel for Regulatory Accountability)**이 최종적으로 만족스러운 보완적 단순화 조치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규제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
3. 기타 모든 제안들에 대한 상쇄적 조치(offsetting measures)의 범위도 고려하여야 한다. RIA는 규제 패키지의 일부로서 단순화를 제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보완적 단순화 조치에 대한 범위가 없다면, RIA는 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단순화 조치를 제시하기 이전에 새로운 규제방안을 개발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새로운 RRO 파워를 이용하는 것이나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는 등의 초기 단순화는 권장된다. 게다가, 새로운 규제와 관련 없는 단순화는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고, 이후에 새로운 규제를 상쇄하는데 쓰일 수 있다.

## 실행 방법

### 조치의 확인

5. 가능한 한 가장 초기 단계부터,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규제 환경, 특히 신규 조치를 창안하려고 하는 분야의 개괄적 내용을 알아 볼 것
  - 규제 제안이 기존 규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지에 대해 자문해 볼 것
    - 어느 정도의 규제가 존재하는가?
    - 기존 규제가 갖는 정책적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집행은 효과적인가?
    - (만일 있다면) 기업의 관심사가 무엇이며 이것이 신청될 수 있는가?
    - 새로운 제안이 기존 요건을 삭제하거나 단순화시킬 수 있는가?
  - 가능한 조기에 경제학자, 통계학자, 그리고 과학자 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라
  - 부처별 선진규제실로부터 조언을 구하라
  - 상쇄적 단순화를 위한 제안의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협의를 거침으로서, 일반인들이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개진이나 권고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단순화 방안을 요청하기 위해 부서의 기존 의견교환창구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6. 정부의 부담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규제를 삭제, 기존 요건을 통합, 또는 중복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의 단순화 수단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안들은 법률이 아니며

도 된다. 예를 들어, 정부부담을 축소하거나 이용을 높이기 위해 단속 및 안전점검을 변경하는 것 등이다(보다 상세한 사항은 부록 A를 참조할 것).

### 영향 평가

7. 반드시 단순화 제안이 새로운 규제 수단에 드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한도와 기존 조항의 삭제로 인해 미치는 영향의 범위 모두를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영향평가는 심의 중인 수단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주요 제안의 경우에, 혹은 상쇄 수단이 상이한 정책 분야까지 포함할 경우에, 보호 장치의 삭제와 경쟁에 미치는 효과가 철저히 평가되도록 하기 위해 개별적인 RIA가 필요하다.

### 선택된 조치

8. 이해관계자들이 단순화 조치를 검토하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단순화 조치가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척도는 영향을 받는 관련 부문이 당해 조치로 규제부담을 줄이는데 실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협의기록에는 반드시 보완적 단순화 제안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기록되어야 한다.
9. 단순화 조치로 절약된 비용이 새로운 규제로 영향을 받은 동일한 규제영역에 속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다. 위에서 개략적으로 언급한 단계들은 그러한 조치들을 확인하는데 조력함으로써, 예를 들어, 도로수송산업에 미치는 새로운 규제영향이 동일한 부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단순화 수단으로, 상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범위의 확대

10. 동일한 규제 영역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상쇄수단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왜 그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야 하고 가능한 한 폭넓은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그 밖의 다른 단순화 범위 또한 고려해야 한다.

## 다음 단계

보다 상세한 가이드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가을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부록 A - 보완적 단순화 조치들

일반적으로 단순화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규제 완화(De-regulation) : 이전에 규제대상인 제도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법령집에서 규제를 삭제하는 것.

통합(Consolidation) : 여러 규제들을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취합해 법을 보다 명확히 재개정하는 것. 투명성과 이해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준수 비용을 감소시킨다.

합리성(Rationalisation) : 여러 부문을 구체적인 수직적 규제로 바꾸기 위해 수평적 법률(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을 의무 같은)을 이용하고 중복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규제들을 해결하는 것.

명확성(Clarification) : 요건의 명확성 또는 누락 및 오류의 정정에 대한 명확성. 법의 불명확성을 해결하고 그럼으로써 준수 비용을 줄이는 것.

단순화 조치는 또한 법률이 아니어도 된다(예를 들어, 정부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단속 및 안전점검을 변경하는 것).

선진규제TF의 보고서 “Less is More”는 정부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계획안들의 예를 열거한 부록이 들어있다. 부록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http://www.brtf.gov.uk/reports/lessismoreentry.asp>

## 단계별 가이드(Step by step guidance)

### 1. 제안서의 표제(Title of proposal)

- 제안명을 관련법들과 함께 기재
- EU 제안서인 경우, 무슨 제안인지, 그 제안의 유형(지침서 같은), 이용한 관련 참고자료의 수, 그리고 협상단계인지 완성단계인지 여부 등을 표시
- 제안서의 명칭이 평범하거나 구어적 표현일 경우, 꺾쇠부호로 표시

### 2. 목적과 의도한 효과(Purpose and intended effect)

- 목적 - 반드시 제안서에 성취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시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배경 - 반드시 현재 상황의 개요를 표시하고 현재의 구조가 쟁점에 관해서 적절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표시하여야 한다.
- 정부의 개입을 위한 이론적 근거 -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지금 현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반드시 서술하여야 한다.

본 섹션과 모든 RIA 과정에 있어서 가능한 조기에 경제학자들로부터 자문을 구해야 한다.

#### 목적

- 목적을 명확히 하여, 의도한대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명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이는 정책 입안의 기초를 형성하고, 정책을 성공적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목적에 대한 적합성 여부의 판단에 따라서 그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지 판단할 수 있다.
- 정책이 **영국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일부 지역에만 미치는지에 대해** 기재해라(영국, 영국과 웨일스, 스코틀랜드 또는 다른 특정 지역들).
- **부처별 선진규제실(BRU)**은 많은 RIA들을 검토하고, 제안자의 정책 목적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바람직한 목적과 바람직하지 않은 목적 사례**

쟁 점	바람직한 목적	바람직하지 않은 목적. 이는 규제목적의 완성에 참고를 줄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다.
여행서류없이 영국에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증가	영국 부두를 통해 들어오는 많은 미서류구비자들(UDAs)의 수를 줄이고, 이에 수반하는 보호시설시스템의 남용을 줄이기 위해서, 승객들이 영국의 출입국관리소에 관련 서류를 제시하기 전에 그 서류를 훼손하거나 처분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이익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항공회사에게 승객들이 자국을 떠나기 전에 관련 서류를 복사하도록 요청할 것
간접 흡연으로부터 발생하는 폐암과 건강 악화의 증가	정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여야 한다.</li> <li>• 사람은 건강에 유해적인 요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식한다.</li> </ul>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할 것

쟁 점	바람직한 목적	바람직하지 않은 목적. 이는 규제목적의 완성에 참고를 줄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다.
간접 흡연으로 부터 발생하는 폐암과 건강 악화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들을 위해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설치를 늘려서 흡연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감소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전체적인 흡연비율을 떨어뜨림으로 수천명의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한다.</li> </ul>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할 것

## 배경

- 간단히 현재의 상황을 설명한다. 사회적, 환경적, 공정성 또는 경제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현재, 이미 쟁점으로 다뤄졌던 백서 또는 법규와 같은, 규정이나 정책들을 서술한다.
- 관련 분야의 현재 정책을 누가 다루고 있는지, 얼마나 그 정책이 효율적인지 자세히 설명한다.
- 기존의 규제나 정책들에 대해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 정부의 개입을 위한 이론적 근거

- EU 지령(EU Directives)과 같이, 행동의 모든 근원을 서술하라
-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지금 현상황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서술

하라. 이것은 “무대안”이 될 수 있다.

- “무대안”을 고려하는 것은 상황의 중요성을 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이것을 기술하기 위해서 균형적 정책을 구상할 수 있다.
- 현재 구조로서는 현 상황이 해결 될 수 없는 이유와,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이 반드시 서술되어야 한다.
-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경우 발생가능한 문제와, 그것이 발생했을 때 미친 영향의 규모를 예측해야 한다.
- 영향을 받게 될 당사자와, 특정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라.
- 가능한 충분한 자료들을 사용하고 예를 들어 설명하라. 일정기간, 보통 일년이 지날 경우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제시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문제가 일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때도 있다.
- 만일 그 문제점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그것이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라.

**RIA에서의 정부개입 부문(중전의 리스크평가부문)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의 좋은 사례 :**

환경식품농촌부 항온수조지침서에 대한 중간RIA  
(Defra Bathing Waters Directive Partial RIA) [PDF 74KB, 16 pages]

- RIA의 대안 섹션에서, 제안자는 목적에 적합한 여러 대안들을 서술 할 것이다. 이러한 대안중 하나에는 반드시 ‘무대안’ 사항이 있어야 한다.

- 이후에 나올 비용 편익 섹션에서 무대안에 대한 비용편익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 섹션에서 취합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과 한계상황이 존재하더라도,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폐해에 대한 위협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개발국가들과 함께, 영국은 이 사전예방원칙을 사용한다.

### 3. 협의(Consultation)

**협이는 RIA 절차와 정책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RIA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해야 한다. RIA는 협의결과 보고서를 체계화하며 협의를 거친 결과들은 RIA에 증거자료가 될 것이다.

협의결과는, 그것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선택가능한 대안들, 비용 편익 및 발생가능한 위험요소 등 정책제안에 필요한 가치 있는 정보를 취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것은 정책제안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협의를 통해 정책제안은 보다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RIA는 일반인들과 자문을 구했던 기관들에게 심의중인 정책대안들을 검토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는 또한 이들에게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내각사무처의 협의활동에 관한 실행지침(Code of Practice on Consultation)을 준수해야 한다 [PDF 202KB, 13 pages].

내각사무처의 협의활동에 관한 가이드(Cabinet Office guidance on consultation)를 준수해야 한다.

## 제 2 부 규제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절차를 통해 가장 최선의 이익을 얻고, **초기 RIA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조기에**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구하기 시작하라
- 협의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 제안자의 부서와 그 밖의 부서(특히 영향을 받는 부문에서 이해관계를 갖는 부서나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에 있는 다른 정책입안자들.
  - 부서별 경제학자, 통계학자, 사회학자 등 기타 전문가들
  - 외부 이해관계자들
  -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경쟁 및 소비자 문제와 관련 있는)
  - 과학기술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정책입안과정에서 과학적 조연을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 헌법문제부(이의제기 메카니즘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consultation@dca.gsi.gov.uk](mailto:consultation@dca.gsi.gov.uk)로 문의하라.
- 중소기업 영향테스트(SFIT)를 위한 초기 조사의 한 부분으로서 조기에 협의를 거칠 필요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상급조직기관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독립된 전문가들을 만나보아야 한다.
- 협의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한다. 서류 협의의 **최소 기간은 12주**이다. RIA절차동안 **최소한 한번은 서면협의를 받아야** 한다. 연휴기간을 피하도록 노력해야하는데, 만약 연휴기간이 있다면, 협의를 구하는데 있어 12주 이상을 잡아야 할 것이다.
- 협의 보고서에는 반드시 **중간 RIA가 포함되어야** 한다.
- 평가를 분석하는데 충분한 시간계획을 세우고,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하라.
- 협의를 거친 모든 평가내용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져야한다. 평가내용을 요약하여 기록해두어야 하며, **웹사이트에 공식 발표**해야 한다.
- 협의를 거친 결과 이루어진 대안들의 변경내용은 반드시 전체 RIA에 기록되어야 한다.

#### 4. 대안(Options)

-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한 대안들 - 정책목적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해야 한다. 각 대안에 대한 리스크, 준수와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비용과 편익 섹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 이행 및 집행계획 - 각 대안에 대한 이행과 그 집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들

- RIA 과정, 특히 사전 RIA때 이루어지는 초기 정책개발단계에서 광범위한 대안 들을 검토해야 한다.
- 목적과 의도한 효과 섹션(Purpose and intended effect section)에서 이미 다루었던 무대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 이것은 다른 대안들과 비교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무반응이 가져오는 의미가 명확하게 될 것이다.
- 규제 이외의 다른 대안책을 검토하라. 선진규제TF 보고서 Alternatives to Regulation[PDF 116KB, 12 pages]은 대안책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 개방된 입장을 유지하라.

#### 개별적 타당성 검토

- 규제 이외의 여러 대안책들(예, 행동기준, 표준, 품질표 등)은 승인 절차를 통한 개별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이것의 예

로 인증이 있다.

- 개별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누가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맡아 진행시킬 것인지, 또 그 절차가 어떻게 평가되고 규제되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국 인증 심사 서비스(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 UKAS)**는 개별적인 여러 타당성 검토과정을 세우고 규율하는데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다.

#### 세부적 사항에서 얼마나 많은 대안들이 검토되어야 하는가?

- 사전 RIA에서는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대안들을 상세히 고려하여야 한다.** ‘무대안’과 최소한 두 가지의 대안을 고려하고 가급적이면 그 두 가지 중 하나는 규제이외의 대안책이면 좋을 것이다.
- 사전 RIA부터 최종 RIA까지 어떠한 대안이 진척되지 않은 경우, 그 원인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 유럽 제안에 관한 협상

- 규제 이외의 대안책 등 제안된 정책에 대한 대안의 범위를 검토하라.
- 각 대안에 대한 관련된 리스크, 비용과 편익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가능한 빨리 수집하라 - 이것은 위원회의 초기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어떤 분야의 협상을 주력해야 하는지 판단하라.
- RIA 가이드가운데 유럽제안 섹션(European proposals section)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포괄적인 정책 방향이 이미 EU지령(European directive)에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 제안가운데 **유연성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라.**
- 지령에서 모든 범위의 대안들을 고려하라.

- **이행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gold-plating)’ EU지령을 야기할 수 있는 대안들을 확인하라.** 이것은 이행이 지침서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어설 때이다. 이 대안들은, 예외적인 상황이 없다면, 비용편익분석과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이 입증된 지침을 필요하게 하는 정부정책이다. 어떠한 모든 불필요한 지침도 RIA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 리스크(Risks)

목적과 의도한 효과 섹션(Purpose and intended effect section)에서, ‘무대안’이 가져오는 영향을 설명했다. 이제는 기타 다른 모든 대안들이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재무부(Treasury) 웹사이트상의 Risk페이지를 참조하라.

- 리스크와 그 발생가능한 방법에 설명하라.
- 리스크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서술하라 - 정책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가?
- 각 대안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기재하라.
- 이전과 유사한 정책들을 조사하라. 다른 나라의 정책들에서 유용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안들을 변경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라.

### 규제의 준수와 집행

- **최대한 준수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라 - 규제가 자동적으로 모두 준수될 것으로 가정해서는 안 된다.** 준수 정도가 저조할 가능성이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라. 영국 및 다른 나라들에 있는 유사한 기존 규제들의 준수정도를 고려하는 것은 분석의 효율성을 줄 것이다.

## 제 2 부 규제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준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사람들은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 준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준수하지 않았을 때 소요되는 비용보다 커서는 안된다.
- 정책 대안들을 집행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을 검토하라. 예를 들어 활발한 소비자가 있는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 전략은 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준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은 조사수위를 낮춤으로서 보상되어야 한다. 만일 정책이 지방정부가 이러한 인센티브 전략을 이용하도록 권장한다면, 지방정부는 전체규제회의(National Regulatory Forum)와 공조를 이루어야 한다.
- 규제의 준수와 집행에 관한 여러 전략들은 정책목적이 성공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행정적인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규제의 준수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라.

### 의도하지 않은 결과

- 각각의 대안들에 의도하지 않은 발생 가능한 결과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조기에 이에 대해 검토한다면,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고 보다 성공적인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규제는 언제나 의도한 대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 이해관계자들, 다른 정부부서, 경제학자 사회연구가, 과학자 같은 전문가들처럼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가능한 한 많이 논의하라.
- 의도하지 않은 발생 가능한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공식적 협의뿐만 아니라 조기의 비공식 협의를 이용하라.

- 의도하지 않는 결과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선진규제TF 보고서 : 규제 합리화를 위한 방안의 16페이지를 참조하라. [PDF 212KB, 56 페이지].

###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관한 예시들

- 사람들은 합법적인 규제 회피방법을 발견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에 관한 규제를 회피를 위해, 기업들은 다른 나라로 이전하여 그곳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것은 영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
- 규제는 기업에 비용을 증가시켜서 **경쟁**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이 문제는 기업들로 하여금 시장을 떠나게 하거나 신규 시장진입을 막을 수 있다.
- 상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나 노동자들이 규제로서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안전에 대해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 만약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시행될 새로운 규제에 대해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불법적 행위를 할 수가 있다. 혹은, 어떤 물품이 대체상품이 나오기 전에 금지 품목이 되었다면, 사재기가 일어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물품이 재활용하는 설비를 갖추기 전에 상품의 재활용이 의무적으로 된다면, 사람들은 그 제품을 불법적으로 버릴 수 있다.

### 이행 및 집행계획

대안에 대한 협의의 일부로서, **중간 RIA과정**에서 이행 및 집행계획을 개요를 설명하라. 각 대안에 대해, 주요한 이슈들을 포괄하는 이행 및 집행계획의 개요를 서술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아래의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책임소재** - 누가 이행에 관해 책임을 질 것이며 누가 결정할 것인가?
- **이행목적** - 정책목적과 필요한 결과들에 중점을 둬
- **이행을 위한 시간계획** -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시점의 계획. 어느 정도 유연성을 확보
- **이해당사자의 확인** - 이행에 있어 누가 이해관계자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누가 더 영향을 크게 받는지를 확인
- **의사소통 전략** -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 지는 기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특히 중소기업에게 조기에 고지.
- **리스크분석** - 각 대안에 있어 이행 및 집행에 관한 리스크관리를 고려.
- **집행과 감시** - 이는 정책목적의 이행과 성공여부가 어떻게 검토되는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행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그 준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고려하라. 규제 대상에 대한 준수와 감시비용에 대해 고려하고, 어떤 특정 집단에 불균형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
- **게이트웨이 평가(Gateway reviews)** [PDF 412KB, 16 페이지] - 적절한 곳에 게이트웨이 평가를 첨부하라. 게이트웨이 평가는 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이 구조, 감시, 그리고 대체수단 등 정책목적을 완성하는데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를 검토.
- **기존 발의안** - 다른 정부 기관이나 조사기관이 제안한 발의안과 부담 등 기존 발의안들과 어떻게 조화될 것인지 고려.
- **완성된 제안을 심사를 위해서는 안내서의 이용을 검토.**

협의를 거친 결과를 고려할 때, 소관 장관에게 어떤 대안을 추천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최종 RIA에서, 추천된 대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경우에는, 보다 상세하고 충실한 이행 및 집행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 계획의 적용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유용하다. 이행 및 집행에 관한 유용한 참고자료는 통상청(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OGC)에서 이용가능하다.

## 5. 비용과 편익(Costs and benefits)

이 섹션은 다음의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

- 영향받는 부문과 집단 - 서로 다른 집단에 각각의 대안이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비용과 이익에 대한 분석 - 본 섹션은 또한 각각의 대안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세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 비용과 편익에 대한 요약 -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을 요약된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RIA의 비용과 편익 점검표는 비용과 이익부분에 대한 본 절의 내용을 완성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섹션은 **RIA의 주요 분석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주요분석내용들은 최종정책권고를 지지하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고, 그리고 정책대안으로부터 얻는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결정의 판단 근거로 고려된다. ‘무대안(do nothing)’을 포함한 각각의 대안에 대한 잠재적 편익과 비용은 본 부분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사전 RIA, 중간 RIA 또는 최종 RIA를 행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분석의 정도에 대해서는 RIA의**

**사전과정에서 최종과정으로 진행됨에 따라 그 분석의 깊이가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지침은 비용과 편익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골격 내지는 구성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지침을 구성하여 비용-편익 분석에 적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른 시기에 담당부문의 경제학자에게 협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학자 이외에도 과학자와 사회학자들에게도 그 내용을 알리고,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이 비용과 편익 부분에 해당되어 제출되는 자료들은 명백하고 비기술적인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제출자료들은 RIA의 첨부자료에 포함될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RIA는 독자적으로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여야 한다는 것을 담당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분석의 결말에는 반드시 각각의 대안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명쾌한 요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 **영향받는 부문과 집단(Sectors and groups affected)**

서로 다른 분야와 집단에 미치는 각각의 대안에 대한 영향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즉, 어떤 대안은 몇몇 집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집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과 편익이 가능한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영향을 받는 집단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 대한 평가를 위해 영향 받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도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다. RIA의 비용과 편익 점검

표(RIA costs and benefits checklist)는 RIA의 해당 부분을 완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이해되는 수준일 것.** RIA가 이해되는 수준일 것이라는 말은 각각의 대안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단을 포함한다. 영향받기 쉬운 집단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비공식 협의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영향 받는 집단에 대해서는 다음의 것들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
  - **기업** - 서로 다른 규모의 특정 산업, 회사와 사업유형
  - **소비자 집단과** 매우 일반적인 시민
  - **자원봉사단체와 자선 단체**
  - 서로 다른 **사회 집단**의 구성원 - 사회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집단은 민족적 배경, 성별, 나이, 건강 그리고 소득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 모든 집단을 포함한다. 이 제안은 또한 장애인, 서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구성원 집단 또는 농촌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서로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인종간 평등** - 인종간 평등의 문제 법규적 의무 사항으로써, 2000년 인종관계 수정법(Race Relations Amendment Act 2000)에 의해 정부 부처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을 구속한다. 그리고 인종 평등영향 평가는 모든 관련 정책에 있어서 필수 사항이다. 더 많은 관련 내용은 [Home Office Websit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책 제안 사항이 어떠한 인종 평등 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미비 내용을 RIA의 해당 부분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 **공공 부문** - 정부 부처, 재무부(Exchequer), 공공 기관들은 변화된 사항에 관한 시행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RIA의 점검표는 비용이 내재되어 있는 집단뿐만 아니라 편익을 얻는 집단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집단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집단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기 오염을 줄이는 정책은 정책과 다르게 행동하는 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염물질이 줄어들고 환경상태가 양호해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간접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RIA의 점검은 다른 대안이 다른 집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확인해야 한다.
- 대안 사항이 집단 내부 그리고 집단간의 분배를 변경하지는 않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 영향받기 쉬운 집단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비공식 협의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비용 편익 분석(Analysis of costs and benefits)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섹션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 자세한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 분석은 각각의 대안에 대한 모든 비용과 편익을 서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분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do nothing)”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 RIA에 있어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보와 그 분석은 발생 가능한 영향에 적합해야 하지만, 그러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 흔히 정확한 비용과 편익을 예측하는 것은 힘들지만, RIA의 분석이 최종적(극단적)인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지 또는 가장 유사한 영향평가 결과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의 범위와 상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각각의 대안에 대해서, RIA 분석은 비용과 편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은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도 추가적으로 담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모든 논의 내용이 “배경(background)”정보로써 포함되어져야 한다.**
- 모든 RIA 비용은 행정 비용 또는 정책 비용으로써 자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비용분석은 본 절에서 모두 기술되어야 하며, 그리고 본 절의 요약 부분에 또한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 제안에 대한 영향 평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제안 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을 기관 또는 개인, 그리고 이미 다른 기관 또는 조직과 관련되거나 또는 중복되는 규제를 확인해야 한다. 각각의 대안이 초래할 지도 모르는 영향과 아마도 있을지 모르는 다른 규제들과의 상호관계도 함께 고려하여 누적 영향(cumulative effect)을 고려해야 한다.
- **현행법을 100% 준수한다는 가정 또는 정책 제안이 100% 준수된다는 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법준수 수준은 낮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현행법의 법준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새로운 규정 또는 행정 정책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과 편익이 나타날 수 있다.
-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무인인지 또는 정책이 어떻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었다고 판명되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비용과 편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는 대안 부분에서 확인된 **의도되지 않은 결과**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RIA 절차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와 정보는 RIA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RIA의 일부 그리고 최종 출판은 2000년 정보 자유(공개)법 하에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제 2 부 규제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RIA의 분석은 **모든 가정**을 설명하고 **검증**하여야만 하고, 그리고 이용된 모든 데이터 또는 방법들을 참고 문헌에 기재해야 한다.
- RIA가 전자 상거래(e-commerce)를 방해하는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리고 영연방(U.K.)의 국제 경쟁에 대한 정책제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영국 내각의 전자 정부국(the Cabinet Office e-Government)은 입법·정책 제안이 전자 상거래를 방해하지 않도록 전자 정책원칙(e-policy principles) 발전시켜왔다.

RIA의 비용과 편익을 다룬 이 절과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다룬 부분과의 연결성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 개입을 다룬 부분은 제기된 논점들의 본질과 그 범위 그리고 영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게 될 것이다. 이 절은 제안된 각각의 대안이 다음의 논점들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로 분석·전개될 것이다.

- 정량화
- 편익에 대한 분석
- 정책과 행정 비용
- 비용과 편익의 범위
- 초과 시간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
- 가설에 대한 검증
- 비용과 편익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 정량화(Quantification)

- 비용과 편익은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량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비용과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표시해야 한다. 금전적 평가는 각각의 대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편익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각 부분의 **직접 비용(direct cost)**은

반드시 금전적 가치로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포함된 경우에, 금전적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경제학자의 조언을 통해서** 경제학적 가치평가 기법을 이용하여 금전적 평가를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고려해야 한다.
- 또한 다른 정량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호할 수 있는 생물의 수, 증대된 인간 능력요건, 방출 물질 수준의 변화 또는 필요로 하는 새로운 장비의 수와 같은 정량화 방법들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각각의 대안들이 비교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들이지만, 그러나 상대적 비용과 편익의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정도로 대체 정량화 방법들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 **임금** - (새로운 입법, 교육, 새로운 업무 관행, 회사에 대한 감사가 소모하는 시간 등과 유사) - 임금 정량화 부분에서는 비노동 임금 비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당 소득(임금)에 대한 연간 조사(the Annual Survey of Hours and Earnings)에서 발표한 임금에 1.3을 곱하고, 각 회사에서 일어나는 해당 활동들이 소요하는 추가시간을 곱하고, 그리고 영향받는 회사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공공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 전체적 또는 부분적 영향을 주는 제안 사항들과 관련하여, 사전적 공공부문 RIA(the Initial Public Sector RIA)에 편익 부분과 비용 계산표를 삽입하여 분석에 이용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 위에 언급한 것들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질적 조건(기준) 부분에 비용과 이익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다. 정량화에 대한 분석 없이는 각각의 대안간의 차이가 명백하게 나타날 수 없고, 그리고 대안에 대한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

편익에 대한 분석(Analysing the benefits)

- **비용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편익을 분석하고 정량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안 목표와 제시된 위험을 고려함에 의해 편익은 파악될 수 있다.
- 행동 또는 활동 방식의 변화, 또는 법준수에 따른 행동이 목표 달성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기술해야 한다.
- **모든 간접비용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일정한 행동 방식의 변화는 추가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고용 비용의 절감 결과 더 많은 회사들이 설립될 수 있다거나, 또는 세금 정책의 변화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은 노동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과 같은 것들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 일단 편익 부분이 파악되고 나면, 가능한한 그 편익 부분을 정량화해서 명시해야 한다.
-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하고, 그리고 평가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설들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정책제안이 소비자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이러한 정책에 대한 편익은 질병/사망의 감소가 된다. 그리고 정책 제안이 대기 오염을 줄이는 것이라면, 편익은 대기에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X% 줄었다고 설명된다. 대기오염과 관련되는 위험은 아마도 질병과 재산적 손해 그리고 경작 피해일 것이다. 따라서 대기오염방지 정책의 편익은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편익에 대한 금전적 가치 평가 산입

몇몇 편익 부분들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평가하기가 쉬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국가 평균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이라는 것은 평가가 용이하다. 가능한 한 빨리 조언을 얻기 위해 경제학자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편익에 대한 금전적 가치 평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다음의 부분에는 금전적 가치 평가가 기재될 수 있다 :

- **시간** - 투자된 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할 수 있다.
- **환경** - 사람들이 강, 공기, 또는 국립 공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이용하여, 국민들이 환경을 위하여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자신들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는 대기 오염으로 고통받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우리는 국민들의 수용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
- **생명/건강** - 통계적인 생명의 가치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NHS의 비용을 평가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사회적 비용** -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좀 더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사람들의 구매는 사람들의 가치에 대한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훈련** - 직원의 훈련(교육) 이후에 증가한 수입과 생산성 향상률에 대한 조사를 이용할 수 있다 ; 또는 훈련된 직원이 요구할 수 있는 고임금에 대한 분석을 이용할 수 있다.

흔히 정확한 비용과 편익을 예측하는 것은 힘들지만, RIA의 분석이 최종적(극단적)인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지 또는 가장 유사한 영향평가 결과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의 범위와 상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재분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분석이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재무부의 보고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에 가는 아주 작은 부분의 배급은 중산층에 대한 배급과 비교하여 두배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고 있다.

#### 비용 분석(Analysing the costs)

- 비용 분석은 제안 목표와 회사·소비자 또는 공공 기관의 필수 행동요건을 고려함으로써 비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 비용 분석에는 간접 비용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설립회사의 감소, 소비자 지출의 감소, 회사간 경쟁의 약화와 혁신의 위축 등과 같은 행동양식의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 일단 비용이 확인되고 나면, 가능한한 그 비용들을 정량화하여 명시해야 한다. 정량화에 대한 명시 없이는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하고, 그리고 평가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설들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 비용에 대한 금전적 가치 평가 산입

몇몇 비용 부분들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평가하기가 쉬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임금의 상승분은 평가가 용이하다. 가능한한 빨리 조언을 얻기 위해 경제학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비용에 대한 금전적 가치 평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다음의 부분에는 금전적 가치 평가가 기재될 수 있다 :

- **임금** - (새로운 입법, 교육, 새로운 업무 관행, 회사에 대한 감사  
가 소모하는 시간 등과 유사) - 임금 정량화 부분에서는 비노동  
임금 비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당 소득(임금)에 대한 연간 조  
사(the Annual Survey of Hours and Earnings)에서 발표한 임금에  
1.3을 곱하고, 각 회사에서 일어나는 해당 활동들이 소요하는 추  
가시간을 곱하고, 그리고 영향받는 회사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새로운 장비 또는 생산 과정에 대한 비용** - 영향 받을 가능성  
이 있는 것들과 관련하여 공식/비공식 협의는 본 항목에 가장 적  
합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 **정보 수집과 법준수 증빙자료 제출** - 임금과 이 요건을 충족하  
기 위해서 요구되는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새로운 장비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인가(허가) 획득 비용** - 평가 수수료에 행정 비용과 노동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될 수 있다. 이러한 비용 산정을 위해서 집행 기관  
은 평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법률·회계 협의 또는 전문가 협의 비용** - 다시한번 말하지만,  
협의 또는 동료의 경험은 매우 소중한 정보가 될 것이다.

#### 정책 비용과 행정 비용(Policy and administrative costs)

- 정책 비용과 협의 비용의 분리는 중요한 문제이다.
- 정책 비용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비용으로서 파악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행정 비용은 필수 요건의  
충족, 감독과 집행, 법준수 증빙과 같은 부분에서 발생한다.
- 행정비용 평가에 있어서는 표준 비용모델을 적용하여 회사, 자선  
단체 그리고 임의 단체에 부과한 행정 비용을 파악해야 한다.
- 정책 비용과 분리하여 행정비용을 파악하는 것은 대체적인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바람직한 범위를 설명하게 된다. 예를 들

어, 정책 목표가 공해물질배출 감소를 위해서 자동차 기술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이러한 정책 대안은 정부 과학자들이 정부 정책을 강제하기 위해서 현재 가능한 가장 좋은 기술을 연구/고안하도록 만들고, 생산라인에서 출시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강제하도록 추진될 수 있다. 반면에 자동차 생산 회사간의 자발적인 합의 또는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세금 부과 정책은 적은 행정비용으로 신기술 개발과 배기가스 배출 감소를 달성할 수 있다.

- 정책 비용과 행정 비용이 상호 비교되는 경우, 이러한 비교 결과는 어떻게 하면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그리고 정책 구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몇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그러나, 제안 사항이 전부 행정 비용으로 집중되고, 정책비용으로는 산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정책비용과 행정비용과의 분리는 자칫 잘못하면 초기단계에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비용과 편익의 범위(Coverage of costs and benefits)

- 일반적으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은 초기 단계에서 정량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제안된 방법에 대한 영향에 충격을 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제안 사항이 특정 산업에 속해있는 회사에게 새로운 안전 장치 구입을 강제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면, 사회적 비용은 새로운 장비의 구입과 사용에 따르는 금전적 비용 그리고 추가 관리와 훈련 시간 모두를 계산하여 산정된다; 그리고 건강상 편익은 건강 상태의 질적 향상과 통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구조된 생명과 같은 것들로 그 가치가 계산된다.
- 몇몇 제안 사항의 경우에는 첫 번째 국면에서 분포상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예를 들어, 제안사항이 비례적으로 작은 회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특정 집단에만 편익을 주는 경우) ; 경쟁 효과(예를 들어, 제안 사항이 산업계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사의 수를 감소시키게 되는 경우) ; 혁신 효과(예를 들어, 규제에 종속되어 있는 산업계에 있어서, 제안 사항들이 회사로 하여금 추가적인 연구/개발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만드는 경우).

-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모든 거시 경제학적 분석 또는 이차적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모두 정량화하여 명시하려고 시도한다거나, 또는 예측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일반적으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추가비용을 공급자 또는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또는 회사가 지불하고 있는 임금을 축소할 수 있는 수준 또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윤의 범위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론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영향에 대한 평가는 경제전체에 순수하게 미치는 영향 분석없이, 경제구조 내에서의 자원의 재분배만을 단순하게 언급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거시 경제학적 또는 이차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기로 한다.
- 이차적 효과를 논의하는 경우, 균형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단지 선정된 이차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자칫하면 편견에 치우친 분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시경제학적 효과(macroeconomic effects)를 논의해야 되는 시기

- 대부분의 제안들은 중요한 거시경제학적 효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고용 또는 외국과의 무역에 대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다른 일자리를 찾을 것이고, 그리고 무역은 내수

또는 수출 수요와 가격에 균형을 맞추는 방법으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 만약에 중요한 **과도기적 효과** 또는 **지역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효과 부분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만약 고립 지역에 있는 대규모 공장이 폐쇄되면, 파급효과로써 지역의 실업 상황이 더 연장될 것이라는 분석) - 그리고 이러한 효과들을 축소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 거시경제학적 영향 평가에 힘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충분히 크고 폭넓은 효과가 있는 소수의 제안들이 있을 수도 있다 - 예를 들어, 최저 임금에 대한 소개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제안된 사항들이 이러한 범주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재무부에 조언을 구해야 한다.

이차적 효과(second-round effects)가 정량화되어 명시되는 시기

- 이차적 효과가 비용 또는 편익 부분에 추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최초 제안이 중요한 부분에서 과장되어 있거나 또는 전시 효과(demonstration effects)를 기재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산업 지역내에 상품의 저장을 제한하는 제안이 결과적으로 상품의 운송량을 증가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추가적인 교통 혼잡은 경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과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는 일정 부분에 정보통신기술(ICT)의 이용을 촉진하는 제안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비용을 절감하는 긍정적 전시 효과를 낳게 된다.
- 그러나, 산업 부문의 지출에 있어서 나타나는 단순한 변화가 중요한 전체적 이차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 산

업 부문이 새로운 안정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면, 장비 공급자의 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산업 부문은 다른 영역에 대한 지출을 축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보는 다른 공급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편익을 얻는 공급자가 정보 기술·생명과학 또는 환경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해 매우 빠르게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규제가 산업을 기술 경향에 발맞추는 가장 최선의 방향으로 지출 방향을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반대되는 강한 증거가 없다면 산출물·투자·생산성의 전체 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된다.

- 제안이 영향 받는 산업 부문에 있어서 **시장 실패를 제거**하는 (removing a market failure)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 경우는 예외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에 전자 서명 사용을 허가하는 규정은 기존 서류를 위한 불필요한 요건에 의해 방해받던 정보통신기술의 효과적 확대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어떠한 전체적 경제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안된 방법의 분배적 효과, 즉 지역간 또는 산업간의 분배적 효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차적 효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기 산업이 재생에너지 의무 규정에 구속된다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순수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풍력 발전 산업에는 편익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Gas 발전 산업에는 불편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 이러한 분배 효과를 서술함에 있어서, 전체 긍정 또는 부정적 효과가 있는 영향평가를 부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편익을 얻는 자와 손해를 입는 자를 기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 제 2 부 규제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초과 시간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Costs and benefits occurring over time)

- 대부분의 규제 제안은 비용을 오랜 기간동안 부과시킬 것이고, 그리고 편익 발생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일단 당사자(평가자)가 확인하여, 그리고 전체 시간에 걸쳐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 대안을 비교하기 위하여 금전적 가치를 비용과 편익 부분에 포함시킨다.
- 사람들은 가능한한 빨리 좋은 상품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가능한 한 늦게 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 규제 정책제안의 경우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편익은 빨리, 비용은 늦게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 해당 부처의 경제학자가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몇 년 동안 할인을 해줘야 하는가?

-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정책 제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10년 동안이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만약 주요 비용이 장비 구입에 관한 것이라면, 해당 장비의 예상 사용 기간이 적용될 것이다. 만약 정책이 **Sunset조항**을 갖고 있다면, 할인 기간은 정책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기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비용 또는 편익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는 장기간의 시간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부처의 경제학자 또는 BRE 경제학자에게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가설에 대한 검증(Testing your assumptions)

- 전체적 정확도를 갖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서로 다른 대안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경우에 가설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적인 권고안이 특정 가설에서부

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설들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비용과 편익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위험 또는 불확실성 영역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 화재 사고 또는 사건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추론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기대되는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 흔히 사건에 대해 그 가능성을 추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가설이 여러 가지 다른 시나리오 속에서 변화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감각적 분석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 제안에 대한 법준수 정도의 차이는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 완벽한 법준수가 항상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 비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편익에 대한 법준수 필요 정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 또한 편익과 비용에 관한 낙관적 선입견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제안이 전개되는 때에 정책 입안자가 너무 낙관적 입장을 취한다는 증거가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증거는 분석 내에 세부적으로 기재될 수 있다.
- 비용과 편익의 범위를 정하는 기법을 사용하라. 비용과 편익의 범위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들과 함께 결정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한다. 다르게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비용, 회수되지 않는 편익 또는 장래에 일어날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 행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비용과 편익의 범위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 가설의 검증과 리스크·불확실성의 취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무부의 관련문서(the Treasury Green Book)를 참고하라.

비용과 편익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Where can I get help with identifying costs and benefits?)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정보 자료의 폭은 매우 넓다. 다음의 사항들은 몇가지 사례에 불과하고, 특정 정책 자료를 포함한 다른 정보들이 있을 수 있다.

- 해당 정부 부처 및 관련 부처의 경제학자와 BRE 경제학자
- 해당 부처 및 다른 관련 부처 동료의 지식과 경험
-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협의
- 학계와 자문단
- 연구 논문, 시장 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과 같은 참고 자료를 위한 도서관
- 재무부의 행정 문서(Treasury Green Book)
- 국가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비용과 편익에 대한 요약(Summary of costs and benefits)

보고서 내에 비용과 편익에 대한 요약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약문은 서로 다른 대안을 쉽게 비교하게 해준다. 요약표를 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비교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각각의 대안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들이 요약되어야 한다.

- ‘무대안(do nothing option)’의 비용과 편익뿐만 아니라, ‘do nothing option’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비용과 편익
- 영향받는 모든 부문과 집단, 그리고 특정 집단에 대해서 **불균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RIA 비용과 편익 점검표는 이러한 영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 몇몇 비용들은 다른 집단에 전가되기도 하지만, **단 한번이라도 발생한 비용과 편익은 기록해야 한다.**
- 연단위 비용처럼 보여지는 금전적 가치

#### RIA 비용과 편익 점검표(Costs and benefits checklist)

본 점검표는 RIA 비용과 편익 부분을 완성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다음의 목록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정책 또는 영향을 받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 경제적 영향
- 사회적 영향
- 환경적 영향

#### 경제적 영향

- 제안이 정부에 지출의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아니면 저축의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 제안이 상품과 서비스의 비용, 질 또는 상품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제안이 새로운 기술을 초래할 수 있는가?
- 제안이 영연방에 대한 투자 그리고 영연방 기업의 해외투자와 자국내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는가?

재무부 관련 문서에서 발견되는 위에 언급된 질문에 대한 세부적 내용

- 영향받는 집단 내에서 경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 제안은 일선조직의 직원배치를 포함해서 공공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가?
- 제안은 사업회사, 자선단체 그리고 자원봉사조직들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영향은 가격, 생산량, 고용 수준 또는 경쟁관계에

## 제 2 부 규제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일정한 형태로 영향을 주는가?

- 제안은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가?

### 사회적 영향

- 제안이 건강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건강 서비스를 위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가?
- 제안이 작업장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지역사회 내의 사고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제안이 범죄율 또는 범죄 예방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범죄 처벌을 위한 새로운 형벌을 만드는가?
- 제안이 기술과 교육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 제안이 지역사회 단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역 사회에 있어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제안이 다음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또는 다음의 대상에 대해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인종 평등** - 인종평등영향에 대한 정책 평가는 2000년 인종 관계법 하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정책이 어떠한 인종 평등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RIA의 영향부문과 집단에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야 한다.**
- 농촌지역사회
- 인권
- 남녀 평등
- 장애인

- 어린이와 청소년
- 노인
- 소득 집단
- 비독립 국가
- 영국내의 특정 지역 분리

### 환경적 영향

- 정책 대안이 온실가스 배출의 변화를 유도하는가?
- 정책 대안이 기후 변화의 예측효과에 대해 약점을 노출하고 있는가?
- 정책 대안이 재정적 비용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가? 또는 나쁜 경영에 대한 환경적 그리고 건강적 영향을 변화시키는가?
- 정책 대안이 대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 정책 대안이 경관 또는 도시환경의 모습에 중요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 제안은 다음의 세가지 내용을 변화시키는가?
  1. 수질오염정도
  2. 물 용출 정도
  3. 홍수위험에 대한 노출
- 정책대안이 거주지 또는 야생동물을 방해하거나 또는 보호하는가?
- 정책대안이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사람들이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환경적 영향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재무부 관련문서 부속서 2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6. 중소기업 영향심사(Small Firms Impact Test)

규제제안이 오직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RIA는 중소기업 영향심사(Small Firms Impact Test, SFIT)를 거쳐야 한다.

중소기업이란 무엇인가?

중소기업의 실체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단순화 시켜, 중소기업 영향심사(SFIT)에 채택되는 기준은 정규직 사원이 250인 이하의 사업장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영향심사(SFIT)는 2가지의 주요 단계를 거친다.

- 1단계 - 중소기업 영향심사(SFIT)의 개시
- 2단계 - 중소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

중소기업 영향심사(SFIT)에 관한 종합 가이드는 중소기업서비스(Small Business Service, SBS) 웹사이트에 있다. SFIT 순서도는 SFIT가 RIA 절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유용한 방법이다.

규제제안이 중소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정책개발의 가장 빠른 단계에서** 중소기업서비스(SBS)와 연락을 취해야 한다. SBS는 SFIT를 완성하는데 도움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SBS 전화 02072158009 또는 이메일 regulation@sbs.gsi.gov.uk.를 이용.

1단계 - SFIT의 개시

- 사전 RIA에서 정책 대안에 대한 중소기업의 견해가 무엇인지 가능한 한 조기에 중소기업의 의견을 타진하라.

- SBS는 협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은 비공식적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료들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SBS는 관련 동업자 단체에 관한 세부자료들도 제공할 것이다.
- 만약 정책 대안들 중에 어떠한 것이라도 중소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있다면, 반드시 SBS에 문의하여야 한다. SBS는 영향을 받게 되는 중소기업의 규정준수를 담보하면서, 그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만일 중소기업이 받게 되는 영향이 심각하거나 복잡하다면, 부분 RIA를 위한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 SFIT의 2단계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 만약 중소기업이 받게 되는 영향이 심각하지 않다면, 부분 RIA에서 다음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 중소기업과의 협의 결과
  - 당신이 협의를 구했던 업체의 수
  - 심각하거나 또는 불균형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 이유
- 1단계를 생략하고, 공식적인 협의절차로서 중소기업의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 2단계 - 구체적 논의

- 1단계에서 정책 대안이 중소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 각 대안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가능성에 대해, 1단계부터 검토함으로써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 것인가 충분히 심사한다.
-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이 **복합적**이라면, 대면적 방식(face to face methods)을 이용하여 SFIT의 2단계를 완성하여야 한다. 기업현장

에서 그들의 견해와 일치점을 찾고, 핵심적인 관리대상의 선정을 고려하라.

- 정책 대안들에 관한 구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아래의 사항들도 고려해야 한다.
  - 규제의 누적 부담
  - 비규제적 대안의 발견 가능성
  -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발생 가능성
  - 다른 특별한 접근방법 - 부분 혹은 전체적 면제가 중소기업에 적절한지의 여부.
- 이러한 협의들은 국민협의(public consultation) 단계를 거치지 이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공식적인 협의 단계에서도 수행될 수 있다.
- 중간 RIA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 협의한 회사의 규모, 부문, 소재
  - 협의한 중소기업을 대표 기관
  - 상담 방법, 예를 들어 전화,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 면담
  - 1단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하거나 불균형한 영향을 확인했는지 여부
    - 소집된 핵심적인 그룹의 수와 이 그룹들에 대한 정보
    - 협의결과 밝혀진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 7. 경쟁평가(Competition assessment)

경쟁평가는 반드시 RIA에 포함되어야 한다. 규제제안이 오직 공공 서비스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는 제외한다.

경쟁평가는 두 가지 주요 단계를 거친다.

- 1단계 - 각 대안에 대한 경쟁여과심사(competition filter test)의 적용 (9개의 ‘예’, ‘아니오’ 질의)
- 2단계 -
  - ‘아니오’가 많다면 : 단순경쟁평가(simple competition assessment)
  - ‘예’가 많다면 : 상세경쟁평가(detailed competition assessment)

경쟁평가에 관한 상세한 가이드는 경쟁평가에 관한 공정거래청 가이드라인을 참조.

경제학자는 좀 더 많은 조언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청 산하 규제심사팀에의 조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화 020 7211 8500, 또는 이메일 [competition.assessment@oft.gsi.gov.uk](mailto:competition.assessment@oft.gsi.gov.uk)를 이용.

## 경쟁필터심사

- 사전 RIA에 **가능한한 빠른 시기에** 경쟁필터심사를 적용해야 한다. 경쟁필터심사 질의는 아래 표와 같다. 영향을 받을 **시장을 우선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서로 같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회사)
- 부처별 선진규제실, 부서별 경제전문가, 그리고 OFT의 규제심사 팀과 함께 시장획정을 검토해야 한다.
- 시장획정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청의 웹사이트 시장획정: 경쟁법의 이해(Market Definition: Understanding Competition Law)에서 찾을 수 있다[PDF 147KB, 27 페이지]
- 영국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영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규제 또는 제안이 직접적으로 두개이상의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상품과 재화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제 2 부 규제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미칠 가능성을 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어떤 규제들은 아주 광범위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국가최저임금제) 아래의 내용은 경쟁 효과가 주로 일어나는 두 세가지의 시장을 확정한 것이다.

질문	대답 예/아니오
Q1 : 새로운 규제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어떤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10% 이상 변화하는가?	
Q2 : 새로운 규제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어떤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0% 이상 변화하는가?	
Q3 : 새로운 규제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시장점유율 크기가 가장 큰 순서의 1.2.3위 기업 시장점유율 합이, 전체 시장점유율의 50% 이상 차지하는가?	
Q4 : 새로운 규제가 다른 기업과 두드러지게 어떤 특정 기업에게 심각한 손실을 유발하는가?	
Q5 : 새로운 규제가 시장의 구조나, 기업의 수 또는 기업의 규모를 변화시킬 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Q6 : 새로운 규제로 인해, 현재 존재하는 또는 잠재적으로 시장참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많은 준비비를 감수해야 하는가?	
Q7 : 새로운 규제로 인해, 현재 존재하는 또는 잠재적으로 시장참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규제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고비용을 들여야 하는가?	
Q8 : 규제대상이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분야인가?	
Q9 : 새로운 규제가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산정하거나 제품의 품질, 수량, 위치등을 정하는데 제한을 가하는가?	

경쟁력 필터심사 질의

- 질문 1,2,3 : 시장
- 질문 4 : 기업에 대한 차별적 영향
- 질문 5 : 시장구조 변화
- 질문 6, 7 : 신규 기업에 대한 부담 부과
- 질문 8 : 기술적 변화
- 질문 9 : 기업에 대한 제한

질문 1,2,3 : 시장(the market)

이 질문들은 영향을 받게 되는 시장구조, 다시 말해 시장지배력의 분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거나 또는 시장지배력이 큰 거대기업의 존재로 인해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경쟁에 관한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시장지배력을 산정하기 위해서, 시장의 범위 산정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RIA가 영국에 대해 초점을 둘 경우, 경쟁력 분석은 지역적인 시장의 크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만일 수입회사가 영국의 기업과 경쟁할 경우, 수입회사 또한 시장분석 대상이 되어야 한다. 어떤 물품들은 하나의 단일 도시나 단일 지역으로 경쟁 시장이 한정되기도 한다. 만일 소비자들이 오직 지역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그 지역에는 소수의 몇 기업만 존재할 경우 경쟁시장의 산정은 그 지역으로 제한 될 것이다.

시장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물품의 가격이 오른다면 소비자가 대안할 수 있는 대체소비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질문 4 : 기업에 대한 차별적 영향(substantially different effect on firms)

기업에 부과되는 비용이 기업에 따라 상이한가? 예를 들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비용이 부과 되는가? 이것은 신규 규제로 인해 대량의 자본이 투자되어야 하거나 행정적인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처럼 비용이 산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특히 더 관련이 있다.

질문 5 : 시장구조 변화(changes to market structure)

만약 신규 규제로 인해 어떤 기업에 상당한 규제를 가한다면, 그 기업은 사업의 존폐 여부를 고려해야하는 심각한 상황을 불러 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크기나 숫자를 변경시킬 수 있고, 그 결과 시장지배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신규규제로 인하여, 어느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 때문에 과연 그 기업이 시장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신규 규제로 인해 가격 상승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다른 기업으로 이동 할 것인 지도 고려해야 한다.

질문 6, 7 : 신규기업에 대한 부담 부과(penalising new firms)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이 기존 기업과 차별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질문 6은 신규기업 또는 잠재적으로 시장 참여를 시도하는 기업에 대한 준비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신규기업이 현존기업보다 더 고비용의 부담을 진다면, 이것이 경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기업들은 규제준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반해, 신규 기업은 더 높은 기준을 단시간 내에

맞추어야 할 경우를 들 수 있다.

질문 7은 현존기업 및 잠재적인 시장참여기업의 규제에 대한 유지비용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신규기업에 발생하는 자본의 산정비용은 질문 6에서 다루어지고, 대여자본의 유지비용은 질문 7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질문 8 : 기술의 변화(technological changes)

기업이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이나, 새로운 제품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예를 들어, 인터넷 기술이나 정보통신 시장). 또한,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시장이 이전과 비교하여 최근 상당한 수준의 변화나 신제품의 개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두 가지가 다 맞다면 대답은 예(yes)이다. 그 시장이 급변하는 기술변화를 겪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규제가 혹시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질문 9 : 기업에 대한 제한(restrictions on firms)

규제가 없을 때와는 달리, 규제를 통해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중단하게 되는가? 예를 들어, 최소기준의 규제부과가 기업들로 하여금 보다 낮은 가격이나 품질이 낮은 선택으로 판매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이 규제는 가격 제한이나 어떤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할지를 제한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 지역제한이 발생한다면 소비자들, 특히 질문 1에서 다루는 소규모 지역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 할 것이다.

## 단순 경쟁평가

필터심사 질의에 대해 ‘예’ 보다 ‘아니오’의 대답이 더 많은 경우, 규제 제안은 경쟁에 거의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자세한 분석 없이, 사전 RIA에서 경쟁필터심사 결과의 기입만으로 충분 할 것이다. 기입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영향을 받게 될 시장의 확정
- 각 시장의 특성을 요약
- 각각의 정책 대안에서 예상되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9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석한 것과 함께 명료하게 서술

**단순한 경쟁평가는 경쟁필터테스트를 대신할 수 없다.**

## 상세 경쟁평가

만약 경쟁필터테스트에서 ‘아니오’ 보다 ‘예’가 더 많이 나왔다면 이는 경쟁에 대한 잠재적인 심각한 영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 경우 당신은 영향을 받게 될 시장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중간 RIA를 위해 상세한 평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분석은 복합적이 될 것이다. 이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경제전문가와 공정거래청 규제조사팀의 경쟁분석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상세한 분석의 목적은 경쟁필터심사에서 확인된 잠재적으로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함이다. 상세한 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 다음에 주의해야 한다.

- 관련분야에서 야기될 모든 도미노 효과 등, 규제가 불러올 모든 가능한 영향을 고려.
- 이러한 영향들이 실질적으로 경쟁에 문제점을 불러일으킬지를 확인.
- 경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책 대안들을 비교하고, 가능하다면 경쟁 대안들의 대안이 있는지를 확인.

상세분석은 아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 **영향을 받게 될 시장 산정.**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시장을 정확하게 산정하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지 모르는 시장도 놓쳐서는 안 된다.
- **현재 경쟁의 특성을 파악.** 규제가 경쟁을 변화시키는지 조사하기 이전에,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 관련시장에서 어떻게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이 조사에서는 상세하게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는 자, 시장의 결과분석 그리고 경쟁이 진행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해야 한다.
- **규제의 영향 분석.** RIA에 나와 있는 각각의 정책 대안들에서 야기되는 직접적, 간접적인 경쟁의 영향들을 상세하게 분석해야 한다.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전까지는 상세분석이 완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간** RIA에 가능한 한 상세하고 많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된다. 어떤 문제점이나 결함에 대해서 협의의 반응으로 도출된 정보를 통하여, 그리고 **최종** RIA에 포함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경쟁분석의 자료들을 가지고, 당신의 대응을 강조할 수 있다.

## 8. 집행, 제재 및 감시(Enforcement, sanctions and monitoring)

- 집행(enforcement) - 각 정책대안들이 규제를 준수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를 설명.
- 제재(sanction) - 규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
- 감시(monitoring) - 각 대안에 대한 준수를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
- 조사(inspection) - 집행의 한 수단으로서 조사를 이용할 때, 조사가 적절하고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서류양식(form)에 대한 부담 완화 - 신청서류양식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 집행

- 각 대안에 대한 다양한 집행 방법을 서술하라. 규제 이외의 대안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라 - 때로는 정부의 집행이 불필요하거나 거의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 각 대안을 영향을 받는 자들이 어느 정도 준수할 것으로 예측되고, 준수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 서술 하라. 이것은 정책 목적성취에 어떤 집행 방식이 적당할 것인지 고려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각 집행 방법에 따라 얼마만큼의 비용과 영향이 있는지 산정하라.
- 집행기관들과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협의절차를 이용하라.
- 협의절차로 부터 추천받은 집행 대안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어느 정도 자유재량을 가질 만큼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정책이 상당히 까다롭거나 정책변경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정

책일 경우에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요소이다.

- 관련된 **기존 정책들의** 규제준수 수준을 서술하라. 만일 기존정책들의 규제준수 정도가 낮을 경우, 낮은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
- 이것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정책에 대해 **완전한 준수를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
- 가능하다면 집행은 약한 것이 좋다. 집행수준은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의 중요성 사이에서 적절한 비례관계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 제안된 정책이, **기존 형식과 시스템, 조사/제재 제도 그리고 집행기관들을** 통하여,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제안된 정책이 **기존 집행 수단들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도 고려해야 한다.
- 목적과 의도한 효과 섹션에서, 각 대안과 관련된 위험을 서술하였다. 본 섹션에서는 규제준수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들을 산정해야 한다.
- **위험을 근거로 한 접근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규제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서 야기될 위험이 낮을 경우, 영향을 받는 그룹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그룹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정책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가?** 예를 들어, 집행기관의 담당자들이 직접 기업들의 규정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것 대신에, 소비자나 서비스 이용자 개인이 직접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 보다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초기단계에서 **집행가능성을 가진 기관들을** 산정하여 이를 RIA에 서술하여야 한다. 집행절차와 각 기관들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집행 책임이 중첩된다면 각 기관들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들로 하여금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초기협의는 매우 중요하다.

- 만약 새로운 집행 기구의 신설을 제안한다면, 왜 기존 집행기관으로서 집행수행이 곤란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신설되는 집행기구 는 기존의 집행 기관들과 적절히 융화되어야 한다. 채용과 담당자들의 연수, 훈련 같은 문제들도 고려하여야 한다. 재무부와 규제합리화반의 승인 또한 필요할 것이다.

## 제재

-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비준수(non-compliance)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적절하고 균형적이어야 하지만, 벌금제도는 비준수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어야 한다. 때로는 높은 수준의 제재는 높은 수준의 규제준수로 귀착되고 조사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 제재와 벌금 제도에 관한 대안들은 공식적인 협의절차의 한 부분으로서 의견을 구해야 한다. 벌금제도는 규제를 위반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영향력을 검토하여야 하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벌칙제도에는 규제준수의 반발에 대해 신축성이 있는 벌칙이 혼합되어야한다. 즉, 평범하거나 약한 반발에는 신속하고도 쉬운 적용이 가능한 벌칙제도에서부터, 규제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악의적인 이해관계자에게는 가혹할 정도의 강한 벌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 **비형벌적제재가 우선적 선택사항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 인가제도나 등록제도 같은 행정적 수단으로서 예방적 통제.

- 개선의 통지, 정지, 정직, 또는 유보의 통지, 금지의 통지 등의 집행적 접근방법.
- 민사제재금(civil penalty), 억제 효과나 시정수단으로서의 벌금.
- 제재가 행정적인 것이라면, 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처리절차는 공정하고, 빠르고 독립적이며 비용이 들지 않아야 한다.
- 만일 새로운 이의제기 절차의 권리가 고려된다면, 헌법업무부서(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DCA) (email: consultation@dca.gsi.gov.uk)로 조기에 문의하여야 한다. 이 기관은 선택할 수 있는 기존의 방법이 있는지를 안내해줄 것이다.
- 만약 새로운 형태의 형벌적 제재를 고려한다면, 내무부(Home Office) (Tel: 0207 035 1726) 와 DCA (email: consultation@dca.gsi.gov.uk)에 문의하여야 한다. 새로운 형벌적 제재는 정책개발에 과중한 업무를 가져올 것이며, 법률 협의 비용을 증가시킴을 기억해야 한다.
- 형벌적 제재나 민사제재금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법원과 법률구조를 통해, 합리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가능한 한 조기에 DCA의 조언을 얻어야만 한다. 이 경우 법률구조 영향 심사(legal aid impact test)가 완성할 필요가 있고, <http://www.dca.gov.uk/laid/impact-test.htm> 서 상세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부담이 따르는 절차는 아니지만, 제안서에 대한 정책승인을 보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 제재에 관한 모든 제안들은 반드시 인권법(Human Rights Act)을 준수해야 한다.

## 감시

- 정책을 감독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감시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이 처음에 계획했던 목적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규제준수의 정

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RIA의 각 대안에 대해 감시 절차를 서술하라.
- 구체적(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성취가능성(Achievable), 관련성(Relavant), 그리고 시간단위계획성(Time-bound)기준을 만들어야 한다(SMART)
- 기존 감시 메커니즘을 고려하라 - 기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없다면, 다른 정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시시스템을 찾아보고 이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 종합적인 정책 목적이 잘 지켜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심사가 잘 수행되는지 평가해야 한다. 정책목적과 조화되기 위해서 어떤 요인들이 평가에 산정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명확해야한다.
- 누가 각 대안의 감시 책임을 담당할 것인지 선정하라. 규제에 대한 준수와 감시 비용을 고려하고, 이것이 어떤 그룹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 감시의 빈도를 설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감시의 결과를 보고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 제안서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되는 당사자들로 부터의 모든 불만 사항을 기록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설정하라.

## 조사

제안된 정책을 감시하고 집행하기 위해 조사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조사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부적절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경우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 조사제도는 집행기관이 실시한 광범위한 위험 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에 따라서만 이행되어야 한다.

**정책 제안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다면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기록에 대한 서류조사인지 혹은 물리적인 현장조사인지 등 조사 이행의 방법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다른 집행기관과 합동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조사를 계획함에 있어 위험요인이 적은 이해당사자들에게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서류 양식의 부담 완화**

정책을 개발 할 때에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기업이나 관련 업계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 어떻게 이해관계자들에게 규제준수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 새로운 서류형식을 고안할 것인지 또는 기존 서류형식에 첨가하거나 기존 정보를 사용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 제안된 정책 변화가 기존의 정보 요청을 감소시키거나 단순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수집과 그들에 대한 영향 가능성에 대해 광의의 협의절차의 일부분으로서 의견을 구해야 한다.

RIA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 제 2 부 규제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정보수집에 대한 유연하고도, 위험을 기초로 한 접근방법에 대한 범위가 있는지 여부를 기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험도가 낮은 데서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위험도가 높은 데서 활동하는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서류양식으로 평가되어야 하는가의 문제 등이다.
- 새로운 서류양식이나 정보에 대한 완화된 요청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비용편익분석은 정보수집에서 얻는 편익이 정부와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모든 새로운 서류양식을 점검해야 하는 규제당국의 ‘영업 준거 집단 (business reference group)’을 기재해야 한다.
- **서류양식 다음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 서류가 미리 기입될 수 있는가?
  - 기업은 서류를 완성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 얼마나 자주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가?

관계부서와 규제당국은 발행된 서류의 수, 서류를 기재하는데 기업이 걸리는 시간, 부담을 완화시키는 절차 등에 관한 연감(年鑑)을 출간하여야 한다. 춘계연례 보고서의 일부로서 어느 곳에 출간할 것인가?

도움이 되는 관련 자료

Hampton Review; p.45 제3장 ‘합리적이며 단순화된 형식(Better, fewer forms)’; 권고사항(recommendations) 14, 15, 16, 18, 19, 20, 22.

선진규제위원회 양식채우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Gillian Browning에 문의.

### 서류양식의 부담완화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 RIA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 정보에 관한 요건:
  - 이 정보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새로운 서류형식이 필요한가?
  - 어느 곳에서도 이용가능한 정보인가? 예를 들어, 일정한 경우, 다른 정부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사용될 수 있는가?
  -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 얼마나 자주 정보가 필요한가? 정보요구시기를 기업 스스로가 정한 정보수집시기와 맞출 수 있는가?
  - 정책변화가 기존의 정보제출요구들을 감소하거나 단순화 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가?

**RIA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 새로운 서류양식이나 완화된 정보제출 요구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SCM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 요구가 기업의 영업에 미치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라.
- 서류양식에는:
  - 모든 질문들이 명료하고 평이한 영어로 되어 있는가?
  - 서류가 미리 기입되는 것이 적절한가?
  - 온라인상에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가?
  - 질문내용은 합리적인가? 예를 들어, 만약 응답자가 연금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그 다음 항목에서 연금정책에 대한 세부 질문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 표준 정의(standard definition)가 사용될 수 있는가?(이것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방대한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서류의 완성기한을 기재할 것인가?

## 제 2 부 규제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초기단계에서 장래 이용자들에 대한 표본 심사를 위해 기존 이해관계자 준거집단을 이용할 수 있는가?
- 서류를 완성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와 집행기관을 위한 충분한 안내서가 있는가?
- 광의의 협의활동의 일부분으로서 정보수집과 그 영향가능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문의해야 한다.

관계부서와 규제당국은 발행된 서류의 수, 서류를 기재하는데 기업이 걸리는 시간, 부담을 완화시키는 절차 등에 관한 연감(年鑑)을 출간하여야 한다.

### 도움이 되는 관련 자료

부서별 서류 디자인 전문가와 기존 서류 디자인 가이드라인들을 참고하여야 한다.

선진규제위원회 양식채우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abplans@cabinet-office.x.gsi.gov.uk](mailto:abplans@cabinet-office.x.gsi.gov.uk)에 문의.

## 9. 이행 및 집행계획(Implementation and delivery plan)

- 이행 및 집행계획 - 전체 RIA에 추천된 대안에 대한 상세한 이행 및 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 완성기간 - 모든 새로운 규제의 완성 기간은 12주이다.

전체 RIA를 실시할 때, 공개 협의를 거친 **이후**에 본 섹션을 완성하여야 한다. 대안 섹션에서, 각 대안마다 이행 및 집행계획의 개요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 섹션에서는 추천받은 대안에 대한 **상세한** 이행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소관 장관의 확인을 위해 제출할 때 부록으로서 전체 RIA에 첨부하여야 한다.

## 이행 및 집행계획

정책 제안서의 성공적인 이행은 효율적인 계획수립에 의해 좌우된다. OGC의 성공적인 이행도구모음은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계획수립에 유용한 안내서는 상무부(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OGC)의 자원관리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영국 내각의 공공서비스개혁 부서와 영국 상무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자료이다.

검토할 요소들로는 다음과 같다.

- **이행 목적과 성과**를 분명히 하라.
- **성공기준** - 정책이 효과적으로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기준과 의도한 정책목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정책을 완성해야 하는 사람들과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위의 협의의 결과가 계획 변경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아래 ‘이행기간’ 참조).
-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날짜를 기재한 시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리스크평가와 관리** - 발생가능성 있는 장애요소나 위험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위험들을 어떻게 감시하고 관리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요한 시간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경우의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 제안을 누가 완성하고 이행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관련 있는 다른 정부 부서나 공공기관과 상의하라.
- 필요한 자원과 비용들을 산정하라. 필요한 기술과 경험이 이용가능한가? 계획된 혹은 최근 이루어진 다른 변화들을 생각해야한다. 이 변화들로 인해 중첩되는 자원이나 비용은 없는가?
- 영향을 받는 그룹들 때문에 취해야 하는 행동들을 조사하라. 예를 들어, 정보의 유지, 서류 양식의 이행, 경험이나 경력의 증명. 영향을 받는 그룹들의 적절한 규제준수를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설명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규제준수가 어떻게 점검될 것인지 생각하라. 중첩되는 정보요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어떻게 정보를 얻어 낼 것인지 생각하라. 다른 기관들과 행정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한번 방문으로 모든 일처리를 끝낼 수 있는(one stop shop) 것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 필요하다면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 -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제재가 수행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의사소통 전략을 개발하라. 이것은 완성과 이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정책이 완성되고 이행되면서 갑자기 생길지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다. 정책변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 계획하고, 가능한 빨리 사용자위주의 안내서를 발행해야 한다.
- 정책수행이 혹시 어떤 특정 그룹에게 불균형적으로,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
- 행동기준(codes of conduct), 표준 및 품질 상표와 같은 규제 이외의 대안책들은 독자적인 자료검증이나 인증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누가 자료검증과정을 수행할 것인지

계획해야한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청은 소비자와 관련된 규정들을 공식적으로 승인한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규제합리화 전문위원회보고서인 규제합리화를 위한 혁신적 사고[PDF 212KB, 56페이지]를 참고.

## 이행기간

- 모든 신규 규제에는 12주의 완성기간이 있다. 안내서가 발행되는 시간과 규제가 발효되는 시간 사이에 생기는 모든 변화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영향을 받는 그룹들에게 합리적인 기간을 주어야 한다.
- 12주는 **최소기간**이다 변화가 중요하거나 복잡한 경우, 연장해도 좋다. 영향을 받는 쪽에서는 변화에 대응할 훈련시간이나,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설치 또는 새로운 상품의 개발시간이 필요함을 명심하라.
- 일반적인 시작일에 따라서 제안이 완성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부서별 규제합리화 추진반에 문의.
-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경우, 규제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예상되는 질문이나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기술한 기업을 위한 가이드를 [MS Word 50KB, 4 페이지]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 10. 이행이후의 심사(Post-implementation review)

이행이후의 심사(Post Implementation Review, PIR)는 이행된 규제안이 의도한 효과를 가지는지,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심사이다. PIR은 정책 그 자체의 효과 심사를 한다거나 혹은 정책이 여전히 바람직한 것인지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 이행후 심사 - 선택된 정책대안들을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 반드시 언급하여야 한다. 만약 입법대안을 제안 하였다면, 일몰조항 (sunset clause)이 포함 될 수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공개 협의 **이후에**, 전체 RIA를 실시하는 단계에서, 본 섹션을 이행하여야 한다.

### 이행이후의 심사

- 일단 정책변경을 하고나면, 수행된 정책이 지속적으로 정책목적에 잘 부합하는지 그리고 정부의 관여가 계속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심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 정책개발 단계에서 심사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엇이 심사될 것인지 명확히 해주고, 정책에 의해 영향을 입게 될 당사자들의 불안을 감소시켜준다.
- **심사의 출발은 RIA로 시작해야 한다.** 심사는 정책목적을 이행하는데 있어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성공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행 및 집행계획에도 성공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심사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3년 이후에 정책변경을 심사하지만 정책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바람직하다. 심사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 정책목적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 비용과 편익 등,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 예기치 않은 결과가 있는지 여부
- 정부의 개입이 여전히 필요한지 여부
- 준수 정도가 집행제도가 효과적이지를 가리키는지 여부
- 정책가운데 어떤 요소가 심사대상인지를 언급해야 한다.
- **심사기준**을 세워야 한다 - 이것이 제정법이 될 수 있는지(법률의 구성부분) 또는 심사에 대한 정치적 공약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한다.
- 만일 해당 규제가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정책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 심사는 단순화나 규제완화의 여지도 고려해야 하며, 부서별 단순화 계획을 위한 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입할 정보가 없더라도, 심사는 내용없는 보고서라도 유도해야 한다.
- 심사기간동안, 이행된 정책의 검토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위해 **이해관계자에게 문의할 필요도** 있다. 심사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모든 결과들을 검토해야 한다.
- 가능하다면, **심사를 담당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 일몰조항(sunset clause)

일몰규정화(sunseting)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심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애초 **법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법전에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다**. 만약 특정 조건이 달성되어도 그대로 둔다는 조건이 없다면, 일정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법이 폐기 될 것을 요한다. 이것은 하나의 법 전체에 적용될 수도 있고 특정조항이나 특정권한에 적용될 수도 있다.

- 일정한 경우 새로운 정책에 대해 ‘일몰조항’의 사용기회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시행 이후의 심사는 재생에 대한 결정을 통지할 것이다.

## 제 2 부 규제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일몰규정화하는 것이 언제나 적절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EU 지침서를 이행하는 규제의 경우나, 기업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당화되는 법에 일몰조항을 이용하는 것은 관료주의화 될 수 있다.
- 일몰조항들은 다음의 경우 적절하다 :
  - 제한된 기간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거나 구체적이요건이 시대에 맞지 않을 수 있는 제안들
  - 특별히 형성된 시장상황을 토대로 했거나, 시장발달상황이 삭제될 수 있는 경제규제에 대한 규제의 경우
  -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규율인 경우로서, 상당한 과학적 불확실성과 여러 정보가 서로 상이한 해결방안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
  - 비용과 편익의 정도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규제
  - 빠르게 변화하는 사건이나 기술로 분류할 수 있는 정책
  - 국가의 권력을 확대하거나 시민의 자유를 축소하는 규제
  - 특정 위기나 정치적, 대중적 압력으로 만들어진 규제
  - 상당한 반대여론이 있지만, 일몰규정화 함으로서 규제안을 보다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경우

2001년 규제합리화 전문위원회 연감[PDF 754KB, 34 페이지]은 일몰조항에 대해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서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 일몰조항의 예

- 2002 전자통신법(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Section 16(4)
- 2002 축구(무질서)안정관리 법(Football (Disorder) Act) Section 5 이는 해마다 갱신되어야 하나, 5년간 연장시행하기 위해 2002년에 개정

촉구(무질서)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되었다.

- 2001 형사정의와 경찰관집무집행법(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Section 15(3)
- 2002 교육법(Education Act) Section 2
- 2002 소방안전법(Fire Services Act)

## 11. 요약 및 추천(Summary and recommendation)

RIA에서 제출된 증거자료와 분석은 최종 RIA내용 가운데 **간략한 요약문**으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 비용편익 (costs and benefits) 요약표

- 총 연간 비용과 편익을 표시하고, 이들을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으로 분류.
- 정책적 비용인지 행정적 비용인지를 설명.
- 반복되는 연간비용과 일회성 비용을 구분.

#### 비용 편익 요약 표

대안	전체 연간 편익 :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전체 연간 비용: -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 정책 그리고 행정적
1		
2		
3		
4		

## 결 론

- 어떤 대안을 선택했는지와 그 이유에 대해 RIA에 있는 증거자료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야 한다.
- 다른 대안들은 선택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하여야 한다.
- RIA는 자립형 문서이어야 하지만, 필요할 경우 보다 상세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12. 선언과 공식발표(Declaration and publication)

### 장관의 선언(ministerial declaration)

- 규제제안이 일단 정부정책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관계 장관은 전체 RIA에 서명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공서비스에만 영향을 미치는 전체 RIA도 포함된다.
- 전체 RIA가 관계 장관의 서명을 받게 되면 최종 RIA가 된다.
- 정책이 두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RIA에 서명할 책임이 있는 자가 대표 장관이 될 것이다.
- 지원부서의 장관에 보고하지 않는 독립기구에 대해서, 장관의 위임을 받고 공인회계사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에 설명 의무를 지는 고위공무원이 RIA에 서명해야 한다.
- 모든 RIA들은 또한 상담문의 및 의견접수를 위한 접촉창구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 전체 RIA는 관계 장관의 서명으로 최종 RIA가 된다.
- 모든 최종 RIA는 다음과 같은 장관선언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

**‘나는 규제영향평가서를 숙지했으며 비용이상의 편익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관계 책임 장관의 서명**

-----

날짜 -----

접촉창구: 성명(장관의), 부서, 부서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 공식발표(Publication)

- 모든 최종 RIA들은 반드시 관계부서의 웹사이트에 식별하기 쉬운 곳에 공식 발표되어야 한다. RIA가 법률과 관련이 없다면 - 예를 들어, 그것이 전략보고서나 시행지침과 관련하기 때문에 -, 관련 보고서나 시행지침과 함께 관계부서의 웹사이트에 RIA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
- 모든 최종 RIA에 관한 원고는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비치되어야 한다 :
  - RIA 3부는 다음 장소에 비치  
Deposited Papers Clerk  
Oriel Room  
House of Commons Library  
London SW1A 0AA
  - RIA 3부는 다음 장소에 비치  
Deposited Papers Clerk  
Derby Gate Library

제 2 부 규제영향평가 가이드라인

1 Derby Gate

London SW1A 2DG

- RIA 3부는 다음 장소에 비치

Deposited Papers Clerk

The Library

House of Lords

London SW1A 0PW

- 020 7219 2004로 서류보관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거나 hclibrary parliament.uk로 상담문의할 수 있다.
- 제정법 문서(Statutory Instruments)에 대해서, 해설집(Explanatory Note)은 RIA가 이용가능하고 입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 의회에서 논의된 모든 법안 및 제정법적 문서에 대한 RIA 문서는 투표사무소(50부)와 최고법원 문서보관소(10부)에서 이용가능하다.
- RIA는 관련 상임위원회가 이용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보 법안의 경우, RIA 요약본은 법제정 취지 설명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수단을 정당화하기보다, 이것은 비용과 수익에 대한 중립 설명서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문언을 사용하여 전체 RIA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
  - ‘본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전체 RIA는 \_\_\_\_\_에서 이용가능하다’
- 유럽 법률에 대해서는, RIA는 의회에 제출된 모든 법제정 취지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전체 RIA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제정 취지 설명서가 우수한 초기 평가내용을 담고 있고 가능한 한 빨리 RIA를 이행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

- 정부가 지원하기로 하거나 반대하지 않기로 한 의원입법 법안의 경우, 제2독회(Second Reading)로 예정된 날까지 RIA를 제출해야 한다.
- 이의가 제기된 의원입법법안의 경우에도 법안에 대한 반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얻기 위해서 RIA를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관행이다.

## 추가 정보(Additional Information)

**서둘러 시작하고 계획을 세워라(Start early and plan)!**

RIA는 정책 혹은 EU 제안들에 대해 작업을 시작하고, 위원회(Commission)가 이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경우에 제안자해야 할 첫 번째 순서가 되어야 한다.

RIA 템플릿을 이용하고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섹션에 기입하기 시작해야 한다 - 그러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부서의 과거 RIA를 기록하던 경험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 RIA를 기록해온 정책 관리들과, 부문별 규제합리화 추진반 동료 등, 전문가들과 상담하여야 한다.

RIA 절차는 신중한 계획 및 수단이 필요할 것이다. 시작하기 전에, 협의 를 구하는 등의 RIA의 핵심이 되는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포함해 **정책개발 추진을 위한 타임테이블**을 세워야 한다. 정책 확인(policy clearance)에 소요될 시간 또한 반드시 계산해 두어야 한다. 또한 좋은 증거자료나 그것을 얻도록 협조해줄 통계학자 및 과학자 등의 전문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RIA 절차와 정책 이행계획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없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 위험이 있다.

**시작하는 방법(How to begin)**

언제나 **실행에 대한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밝힘으로서 시작한다. 제시한 제안의 필요성 - 그리고 그것의 잠재적 효율성 - 은 여기서 밝힌

목적에 반하여 평가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안이 구체적인 위해성을 다룰 것인가, 현재의 상황을 단순화할 것인가, 혹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인가? 이것을 가능하면 간략히 기술하고, 쟁점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정부의 개입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 제안이 어떤 쟁점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간단히 기술하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경우, 제안자가 설명한 상태가 현상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혹은 악화될 것인가를 설명해야 한다.

### 리스크(Risks)

리스크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무대안(do nothing)**’에 관한 영향의 리스크와, 선택한 정책의 실행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그것이다. 제안자는 언제나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 쟁점을 둘러싸고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진행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어떤 정보가 이용가능할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지, 누가 영향을 받을지 등에 대해 의문을 던져야 한다.

### 다음 단계(The next steps)

**대안들**이란 무엇인가? 언제나 활용 가능한 대안의 **범위**가 있다. 만일 최소한의 가능성만을 고려했다면 가장 효과적인 실행과정을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 비규제적 접근, 혹은 규제적 패키지 및 비규제적 수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규제는 오직 그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만이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무대안’**을 포함시킬 것을 잊지 말아라. 비록 이 대안이 이용될 가능성은 희박할지라도, 이는 기타 잠재적인 정책실행 과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출발점(baseline)’을 제공한다.

### **정책과정에서 RIA가 강한 설득력을 갖게 하라(Make the RIA influential in the policy process)**

되도록이면 조기에 시작하고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RIA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RIA는 살아있는 문서이다.** 위험, 비용, 그리고 수익에 관한 정보가 보다 명확하도록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정당성과 위험평가를 재검토하고, 제안자의 가설이 여전히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숙고하라.

### **템플릿(The template)**

RIA 템플릿을 이용하여 RIA를 구성하는데 조력하도록 해야 한다. 특정 섹션이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결론을 유도한 증거자료 또한 제출해야 한다.

### **비용과 편익(Costs and benefits)**

제안된 대안에 대해, 누가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 누가 승자가 될 것이고 누가 패배자가 될 것인가? 영향을 받는 자들의 수는 얼마인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을 것인가? **시작단계에서 소관 부서의 경제학자들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한다.**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편익에 대해 포괄적인 **설명**부터 우선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정량화하는 단계로 이동하라. 이는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것을 입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데 노력할 것이다. 초기에 가정(assumption)을 상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되, 가정 그 자체를 검토하라. 불확실한 요소가 있다면 범위를 사용하라.

제안이 순비용이나 편익을 갖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과 편익을 **이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패배자’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라. 어떤 **불균형적인 영향**이 특정 그룹에 미칠 수 있지 않는가? 소수민족과 낙후된 지역에 사는 자들 같은 그룹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고려하라. 어떻게 이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면제 또는 집행시기의 연기 등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적 영향은 다른 대안들이 보다 매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 가독성과 길이(Readability and length)

이해하기 어려운 RIA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술적인 정보를 전달한다면, 직접적인 용어로 표현되었는지를 확인하라. RIA는 자립형 문서이어야 하며, 독자가 어떤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추측을 해서는 안 된다.

RIA는 논의의 대상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청중을 생각하라. 부록이 첨부된 짧은 문서는 길고 부록이 없는 단일 문서보다 읽기 쉬울 것이다. 모든 대안들과 그 비용 및 편익을 요약한 목록을 만드는 것이 유용하다.

## 협의(Consultations)

**협의의 일부로서 RIA를 제공해야 한다.** RIA는 협의를 구하기 이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지해야 한다. RIA는 협의과정에서 몇 가지 질문, 특히 영향에 대한 것들에 대해 공식화할 수 있다. 게다가, 협의를 거침으로서 RIA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고, 정보수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다방면에 걸친 RIA(Overarching RIAs)

어떤 경우에, 직접 관련이 없는 법안이나 수많은 정책들을 처리할 수 있으나, 이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보호막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든 수단들을 논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단일 RIA를 준비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주제에 따른 ‘소형 RIA’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다방면에 걸친 문서에서 총 비용과 편익을 설명할 수 있다.

## 유럽의 제안들(European proposals)

유럽 제안들을 대상으로 RIA를 준비할 경우에, 무작위의 결과는 협상의 결렬이나 영향력의 결여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위해를 언급하는 것 또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 등의 정책 목적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 규제영향평가 순서도(RIA flowchart) : 생략

## 규제영향평가 점검표(RIA Checklist)

### Section 1-8

Section 1-8은 사전, 중간, 최종 RIA를 위해 완성되어야 한다.

#### 1. 제안서의 표제

EC지령과 같은 참고문헌 모두를 기재한 완전한 표제

#### 2. 목적과 의도한 효과

- **목적** - 정책제안으로 인해 성취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시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배경** - 현재 상황의 개요를 기재하고 현재의 구조가 그 쟁점에 관해서 적절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재해야 한다.
- **정부의 개입을 위한 정당성** -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지금 현 상황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서술해야 한다.

#### 3. 협의

- **정부기관의 협의**  
협의를 거친 정부 기관과 부서들을 열거해야 한다.
- **공개 협의**  
협의의 결과와 그 영향을 기록해야 한다.

#### 4. 대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각 대안과 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무작위' 대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는 실행하지 않는데 대한 영향

이 명확해야 하고, 다른 대안들을 평가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각 대안과 관련한 모든 위험들, 그 발생 가능성, 그리고 위험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각 대안의 이행 및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5. 비용과 편익

### ● **영향 받는 부문과 그룹들**

제안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 있는 부문과 그룹들을 열거해야 한다. 그룹 대부분이 개인, 자선단체, 혹은 공공 및 사적 기관일 것이다. 이들 그룹에 불공평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룹들을 고려해야 한다.

정확한 비용과 편익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범위를 제시하고 이것이 극단적일 때의 값을 나타내는지 혹은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치의 범위를 표시하는지를 언급하라.

### ● **편익**

정책의 실행에서 오는 수익을 확인하고 이를 정량화하는 것은 비용에서 만큼이나 중요하다. 제안의 목적과 제시된 위험을 고려하여 수익을 확산할 수 있다.

### ● **비용**

본 분석은 정책 및 행정 비용간의 분리를 반영해야 한다. 제안의 목적과 기업과 소비자 또는 공공부문이 이행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 비용을 확산해야 한다.

## 6. 중소기업 영향 심사

중소기업에 대한 각 대안의 영향을 고려하고, 중소기업 영향심사의 상세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중소기업서비스에서 이에 대해 문의해야 한다.

### 7. 경쟁력 분석

각 대안에 대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에서 문의하여야 한다.

### 8. 집행, 제재, 그리고 감시

규제제안은 어떻게 집행되는가? 누가 그것을 집행하는가? 제재 수단은 무엇이 되는가? 정책이 본래의 목적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

## Section 9-12

Section 9-12는 협의를 거친 후에 완성되고 전체 RIA에 포함되어야 한다.

### 9. 이행 및 집행계획

RIA의 부록으로서 정책 변경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무엇이 발생하고 언제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10. 이행이후의 심사

정책 제안이 갖는 효율성을 어떻게, 언제 평가할 것인가? 새로운 주요 규제들은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심사되어야 한다.

11. 요약 및 추천

어느 대안이 추천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에 이르는데 있어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을 언급해야 한다. 각 대안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표를 이용해 요약하라.

비용과 편익 요약 분석표

대안	연간 총 수익 :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연간 총 비용: -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 정책과 그 관리
1		
2		
3		
4		

12. 선언과 공식 발표

관계 장관은 ‘나는 규제영향평가서를 숙지했고 비용이상의 편익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문의와 의견제출을 위한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기록되어야 한다. 비용 및 수익 목록을 요약하라.

## 규제영향평가 템플릿(RIA Template)

### Sections 1-8

Sections 1-8은 사전, 중간, 그리고 최종 RIA를 위해 완성되어야 한다.

1. 제안서의 표제
2. 목적과 의도한 효과
  - 목적
  - 배경
  - 정부 개입을 위한 정당성
3. 협약
  - 정부기관의 협약
  - 공개협약
4. 대안
5. 비용과 편익
  - 영향을 받는 부문들과 그룹들
  - 편익
  - 비용
6. 중소기업 영향심사
7. 경쟁력 분석
8. 집행, 제재, 그리고 감시

### Sections 9-12

Sections 9-12는 협의를 거친 후에 완성되어 하고 전체 RIA에 포함되어야 한다.

9. 이행 및 집행계획

10. 완성이후의 심사

11. 요약과 추천

비용과 편익 요약 분석표

대안	연간 총 수익 :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연간 총 비용: -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 정책과 관리
1		
2		
3		
4		

12. 선언과 공식 발표

나는 규제영향평가서를 숙지했고 비용이상의 편익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서명.....

날짜

장관의 이름, 직위, 부서

문의 및 의견서 제출을 위한 담당자 연락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비용 및 편익 목록을 요약해야 한다.

## 초기 공공부문 규제영향평가 가이드(Initial Public Sector RIA Guidance)

### 소개

제안이 공공부문에서만 영향을 미칠 경우에, 초기공공부문 RIA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공공서비스에 관한 영향분석을 제공할 것이고, RIA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여 보통의 방식으로 전체 RIA를 전개해야 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초기 공공부문 RIA는 정책판단의 가장 초기단계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이것의 목적은, 가능한 한 초기단계에서 서비스 이행에 대한 영향과 그것을 지원하는 부서를 검토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초기 공공부문 RIA는 소속 장관에게 통지하고, 제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의뢰서를 원칙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제안을 이행하는데 드는 각 대안에 대한 위험가능성, 편익, 비용에 대해 예상가능한 최선의 평가액을 기재해야 하고, 이것은 어느 분야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초기 공공부문 RIA는 민간부문, 자선단체, 그리고 자원봉사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안들에 대한 사전 RIA과 비교하여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다르다.

- 이것은 중소기업 영향심사나 경쟁력 분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 이것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규제제안이 미치는 시간적, 금전적 영향을 정량화하는데 조력할 비용예측목록(cost calculation table)를

담고 있다.

- 초기 공공부문 RIA는 전체 RIA로 전개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제안자의 제안이 공공서비스 및 민간부문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초기 공공부문 RIA는 공공부문에만 오직 영향을 미치는 제안들에 대해 완성되어야 한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에 영향을 주는 제안들의 경우, 여전히 초기 공공부문 RIA상의 비용과 편익 섹션을 이용하여 RIA상의 비용과 편익 섹션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부문 영향에 관한 유용한 분석을 제공할 수 있다.

### 초기 공공부문 RIA는 어떻게 실행하는가?

RIA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초기 공공부문 RIA 템플릿을 이용해야 한다. 비용예측목록 이외에, 초기 공공부문 RIA상의 모든 섹션을 위해 주요 RIA 가이드를 참조해야 한다. 그러나, 초기공공부문 RIA는 중소기업 영향심사나 경쟁력 분석이 필요 없다. RIA를 작성하는 것이 처음이라면, RIA 순서도와 RIA를 시작하기 전에 숙지할 사항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초기 공공부문 RIA를 완성하는 것은 전체 RIA가 전개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제안이 임계값 기준(Threshold Criteria)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전체 RIA가 필요하다면, 초기 공공부문 RIA는 유용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고, 또한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적할 것이다.

## 비용예측목록은 어떻게 기입하는가?

직접적인 공공서비스와 기타 이와 결부된 공공서비스 모두에서, 정책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그룹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용예측은 각각 확인된 그룹을 검토하여 완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환자들의 보호에 관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새로운 정책 발의는 GPs, 국가건강서비스에서의 병원 의사 및 간호사, 지역관청의 사회 서비스 노동자와 행정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 상에서, 비용분석은 정책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5개 그룹들 각각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영향받는 각 부문에서 규제제안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총 추가 시간은 연 단위 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제안을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준수와 훈련 등을 설명하기 위해 정보를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이 포함될 것이다. 부문별 연간 총 시간이 계산되어야 하며, 그리고 나서 모든 관련 부문에 대해 연간 추가 시간의 총계가 기록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영향 받은 각 부문에서 개인당 시간 비용은 총 임금 비율과 비임금 노동비용을 합해서 연간 파운드로 계산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민보험, 연금, 그리고 근로시간에 따라 바뀌는 기타 비용들이 있다. 부문별 연간 총 임금이 계산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영향 받는 모든 관련 부문에 대해서 연간 추가 비용의 총계가 계산되어야 한다.

비임금 비용 또한 계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IT 설치비용, 조달비용, 자본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

시행 첫 3년간의 비용은 계속/반복적 비용뿐만 아니라 일회성 이행비를 뜻한다.

**초기 공공부문 RIA는 언제 전체 RIA로 전개시킬 필요가 있는가?  
(임계값 기준이란 무엇인가?)**

임계값 기준에 적용해야 하는 초기 공공부문 RIA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기준1은 기준가격으로 5백만 파운드를 정하고 있다 - 만일 제안에 대한 총 금전적 비용이 이보다 크다면, 전체 RIA가 실시되어야 한다. 만일 관련부서가 기능적 게이트웨이 절차를 두고 있다면, 이러한 기준 가격은 BRE와 합의하여 다시 맞추어질 수 있다.

기준2는 제안이 정치적 또는 미디어의 높은 관심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총 비용이 5백만 파운드를 넘지 않더라도, 역시 전체 RIA를 실시해야 한다.

**전체 RIA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전체 RIA가 필요하지 않다면, 소속 장관에게 정책제안서에 동의를 구하는 제출서에 초기 공공부문 RIA를 첨부해야 한다. 이는 왜 전체 RIA를 실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소속장관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초기 공공부문 RIA의 결과**

제안이 미디어나 정치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금전 비용이 기준가격을 넘지 않을 경우.

제안이 미디어나 정치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금전 비용이 기준가격을 상회할 경우; 또는  
제안이 미디어나 정치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금전 비용이 기준가격을 미치지 넘지 않을 경우; 또는  
제안이 미디어나 정치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금전 비용이 기준가격을 상회할 경우.

### 전체 RIA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공공서비스에만 영향을 미치는 제안에 대해 실시한 전체 RIA는 중소기업 영향심사나 경쟁력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RIA과정에서 유일한 예외적인 경우이다. RIA의 다른 모든 섹션은 반드시 주요 RIA 가이드에 설명된 대로 완성되어야 한다.

RIA를 기록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면, RIA 순서도와 RIA를 시작하기 전 숙지해야 할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공공서비스에만 오직 영향을 미치는 제안에 대한 RIA도 역시 공식 협의절차에 포함되어야 한다. 전체 공공부문 RIA는 평소대로 서명을 거쳐, 선언 및 해당 부서 웹사이트에 게재되어야 한다. 보다 상세한 가이드를 위해 협의섹션(consultation section)과 정책 확인(Policy clearance) 섹션을 참고하길 바란다.

### 추가 조연과 정보

추가 조연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초기 공공부문 RIA를 실행하는 방법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부서별 규제합리화 추진반(BRU), 부서별 게이트웨이 팀, 그리고 경제학

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누가 제안자 BRU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0107 276 2353으로 BRU에 연락하십시오.

## 추가 정보

### 바람직한 실행원칙(Principles of Good Practice)

초기 공공부문 RIA를 실행할 때, 가능한 한 조기에 다음의 바람직한 실행원칙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

- 선두에 있는 관련 이행공무원과의 비공식적 협의
- 기존 절차를 단순화하거나 통합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
- 다음의 경우에 대한 고려:
  - 선두에 있는 이행공무원이 실시하는 소비자와의 상담시간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 제안이 정부의 다른 부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다른 제안들이 어떤 경로로든지 간에 지난 12개월 안에 같은 그룹의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쳐왔는지 여부
  - 제안이 다음 12개월 이내에 중요부분에 대한 재설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안이 1년에 10만 파운드 이상 지방정부 비용으로 전반적인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지 여부. 만일 그렇다면, 관련부서는 신규 부담원칙에 따라서 자금을 조달할 책임을 가지게 될 것이다. RIA에 대한 임계값 심사결과에 따라서, 관련부서들은 신규 부담원칙이 여전히 적용 될 발의안에 대한 RIA를 완성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비록 RIA가 요구되지 않더라도 지방정부를 위한 영향 평가가 초기단계에 실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신규

부담원칙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020 7944 4013으로 총리실(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Paul Andrews에게 문의할 수 있다([www.local.odpm.gov.uk/finance/ssas.htm](http://www.local.odpm.gov.uk/finance/ssas.htm)).

관련부서가 갖는 추가적인 최선의 실행원칙을 인용해야 한다. BRU는 이에 대해 조언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안이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친다면, 규제에 대한 다른 대체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보다 상세한 정보로는, 규제합리화 전문위원회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규제의 대체방안[PDF 116 KB, 12페이지].

## 공공서비스의 범위 확정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의 스케줄1은 광범위한 공공기관 리스트를 담고 있고, 부서에 유익한 참고자료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리스트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의심이 나는 경우에 기능유형을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속부서의 법률고문과 연락을 취해야 한다.

## 게이트웨이란 무엇인가?

완전한 기능적 게이트웨이란 지방의 이행기관에 내려진 정책발의안의 질적 및 양적인 평가를 중앙정부 부서가 관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전형적인 절차는 부서내로 집중되고, 관련있는 이해관계자와 공무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합하며, 기업요건에 대한 각 발의안의 기준과 균형성을 규제하는 일련의 기준을 설정한다. 초기 공공부문 RIA는 게이트웨이 기준과 전체 RIA가 필요한 적절한 금전상의 임계값으로 통합될 수 있고, 부서의 특정 기능에 짜 맞추어질 수도 있다. 게이트웨이

이가 BRE의 불이행 임계값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금전상 임계값을 마련하기로 결정한다면 BRE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게이트웨이 절차는 지방 공공서비스와 그 공무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집중된 방식으로 보충될 수도 있다. 처음부터 불필요한 데이터 요청을 줄이기 위한 절차가 그 하나의 예이다.

BRU는 소속부서가 게이트웨이를 적절히 두고 있는지 혹은 그것을 고안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 초기 공공부문 규제영향평가 템플릿(Initial Public Sector RIA Template)

### 1. 표제

### 2. 목적과 의도한 효과

제안의 목적을 명확히 기술하라(제안이 의도한 것)  
말하고자 하는 쟁점이 무엇인가? 누가 영향을 받는가?  
쟁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파급효과는 어떠한가?

### 3. 대안

어떤 대안이(무작위를 포함하여) 이 문제해결을 위해 가능한가?  
이들 각각의 대안에 대해, 공공서비스 담당자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요청할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가?  
제안이 다른 곳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대안 가운데 불균등하게 영향을 받게 될 그룹은 없는가?

### 4a 편익

각 대안이 얻게 될 수익은 무엇인가? 누가 혜택을 입는가? 그리고 어떻게 혜택을 입는가?  
담당자에게 돌아갈 금전적 혜택(비용 절약)을 검토한 경우에, 4(b)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한 목록을 사용해 이를 설명해도 된다.

#### 4b 비용

제안에 소요될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누가 불리한 영향을 받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시행 첫 3년간의 비용은 새로운 제안이 야기한 일회성 이행비와 제안의 계속적/반복적 비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각 대안에 대해, 처음 3년간 해마다 인건비와 비인건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도표를 이용해야 한다 :

	공공부문 담당자		
	경찰	*	*
(a) 1인당 시간평가(연간 시간)	Y1 Y2 Y3	Y1 Y2 Y3	Y1 Y2 Y3
(b) 영향 받는 사람의 수			
(c) 총 시간평가(a×b)(연간 시간)	Y1 Y2 Y3	Y1 Y2 Y3	Y1 Y2 Y3
(d) 1인당 시간비용			
(e) 총 인건비(c×d)(연간 파운드)	Y1 Y2 Y3	Y1 Y2 Y3	Y1 Y2 Y3
(f) 비인건비(연간) 예. IT 설치비 정부조달비 자본	Y1 Y2 Y3		
(g) 총 인건비(e+f)(연간)	Y1 Y2 Y3		

\* 영향받는 공공부문을 기재하시오. 예를 들어, 의사, 교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법원 등.

비용예측목록에서 얻은 정보를 간추리기 위해서는 다음의 표를 완성해야 한다.

비용예측목록

비용-합계	1년	2년	3년
대안1			
대안2			
대안3			

## 5. 감시와 평가

정책의 효율성과 성공은 어떻게 측정되고 평가되는가?

## 6. 연락처

평가서와 제안서의 문의에 답변을 할 수 있는 담당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라. 일자를 기재하라.

주석 : 본 템플릿은 초기 공공부문 RIA에서 요구하는 표준 핵심정보를 대략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부서들은 각자의 구체적인 정보요청을 추가할 수 있고, 분야와 관련성이 많은 부분을 특별히 분류할 수 있으며, 실례를 추가할 수도 있다.

## 정책 확인(Policy clearance)

- 장관의 공동합의 - 정책이 장관의 공동합의를 필요로 할 사안인지 고려해야 한다. 규제영향보고서(Regulatory Impact Statement)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
- 규제책임성패널(Panel for Regulatory Accountability) - 정책이 장관의 공동합의를 얻기 이전에 규제책임성패널로부터의 확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장관의 공동합의

필요한 경우 제안의 유형에 따라서 내각위원회(Cabinet Committee)의 논의나 장관의 서신교환을 통해 공동합의를 구할 수 있다.

공동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제안으로서, 협의회 문서와 의회보고서 및 정부보고서의 공식 발표되는 경우와 규제의 내용이 한 부서 이상에 영향을 미칠 경우가 있다.

내각사무처장관실(Cabinet Office Cabinet Secretariat) 웹사이트에서 정책확인에 관한 보다 상세한 가이드를 읽을 수 있다.

장관의 공동합의를 구하기 전에 규제책임성패널로부터 정책의 확인이 필요한지에 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내각위원회의 결정

정책 또는 기타의 제안들은 다음의 같은 경우에 내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 쟁점이 주요한 정책적 관심을 일으킨 경우나 일반인들의 심각한 의견이나 비판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관계 장관이 서신과 토의를 통해서도 부서간 편익충돌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 서신을 통한 결정

대부분의 위원회 업무는 관련 위원회를 통괄하는 장관과의 서신교환을 통해 처리될 수 있고, 수상, 위원회 구성원, 그리고 내무장관에게 사본을 전달한다. 서신은 간략하고 명료하며 정확히 써야 하며, 중간 RIA를 기재해야 한다. 만일 제안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서신에 규제영향보고서(Regulatory Impact Statement)를 첨부해야 한다.

수상은 모든 서신이 언제까지 회답을 구한다는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서신에 핵심 쟁점과 권고사항을 요약한 굵은체의 짧은 문단으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날짜는 코멘트를 위한 10일의 유예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에 미치지 못한 시간이 부여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장관의 추가적 공동 확인

제안이 협의를 거친 이후에 상당부분 변경된다면 추가적으로 장관의 공동 확인(기본법률이 관련된 경우에는 입법계획위원회(Legislative Programme Committee, LP Committee)를 통한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보다 많은 조언을 구하기 위해, 부처별 선진규제실과 관련 내각위원회와 함께 점검하여야 한다.

### 규제영향보고서란 무엇인가?

- 규제영향보고서는 제안에 대한 공동 합의를 구하는 내각 보고서나 장관서신에 첨부하는데 쓰이는 단락(paragraph)(부분 RIA와 함께)이다.
- 이 단락은 새로운 또는 수정된 규제를 담고 있는 모든 제안들에 대해 기업, 자선단체, 자원봉사기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
- 이것은 중간 RIA의 결과와 내각의 BRE 및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Service, SBS)과의 모든 심의내용들 주시해야 한다.

### 규제영향보고서는 언제 필요한가?

- 제안이 '중요'하다면, 즉 다음 중 하나 이상에 속한다면 규제영향보고서를 필요로 한다 :
  - 중간 RIA가 많은 비용을 제시한다(한해에 2천만 파운드 이상).
  - 쟁점이 상당히 미디어에 화제가 되고 있고 민감한 사안이다.
  - 쟁점이 선진규제TF가 보고했거나 TF 업무가 이를 관리하고 있는 쟁점인 경우이다.
  - 제안이 특정그룹(예를 들어, 중소기업, 자선단체, 또는 특정 소수그룹)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규제영향보고서는 만일 제안이 중소기업, SBS에 영향을 미친다면, 내각의 BRE와 반드시 합의가 되어야 한다. SBS는 정부문서나 동료들에게 보내는 서신에 기록된 자체 견해를 가질 권리가 있다.
- 규제영향보고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면, BRU 또는 내각의 BRE와 협의하라.

### 규제영향보고서의 예

농경지 하수슬러지의 재활용에 대한 규제수단을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에 대한 규제영향보고서

‘해양 쓰레기 투매와 2005년 말까지 산출될 슬러지 양의 증가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투자는, 농경지에 재활용 슬러지의 사용증가와 일정한 경우에 부분적으로 소각의 증가를 토대로 한 하수회사의 전략과 함께, OFWAT가 정한 가격한도 내에서 허용되어 왔다.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스(Wales)에 이를 개선하는데 드는 자본비용은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약 4억 파운드로 추산된다.

중간 규제영향평가는 제안된 규제안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과 비교하여 분명한 환경적 수익이 있음을 설명한다. 소각은 반복비로서 1억 7천 3백만 파운드, 매립식 쓰레기 처리로 8천3백만 파운드가 필요한 반면, 농경지 경로(agricultural route)가 2천3백만 파운드의 비용이 든다. 게다가, 소각은 6억6천1백만 파운드의 자본비용을 필요로 하는 반면, 농경지 경로를 위한 현재 AMP3 프로그램은 4억 파운드를 필요로 한다. 본 제안이 산업에 있어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각의 규제합리화 집행관의 의견을 구했다. 규제합리화 추진반은 본 제안이 갖는 위험, 비용, 수익에 대해 적절히 평가했고 본 제안이 바람직한 규제원칙-투명성, 책임성, 목적의 명확성, 일관성, 균형성-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 규제 책임성 패널

기업에 주요한 신규부담을 지울 가능성 있는 모든 규제 제안들은 수상(Prime Minister)이 의장직을 맡은 규제책임성패널로부터의 확인을 필요

로 한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주요 면제대상은 비상입법(emergency legislation)과 보통의 예산안 책정 과정에서 대법관(Chancellor)이 심의하는 조세문제이다. 패널의 심리는, 제안이 장관의 충분한 승인을 받기 전 내각사무처 BRE의 동의를 받은 제안에 대한 RIA를 토대로 한다. 패널은 부서의 이전 규제실적과 핵심 사업부문에 대한 규제부담과 관련한 모든 제안들을 심리한다.

정책이 규제책임성패널로부터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BRU에 문의하라.

## 유럽 제안(European proposals)

본 섹션은, 공동결정 절차에 따라 협의된 지침서에 초점을 두어, 유럽 제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한 사항들을 다룬다. 그러나, 유럽 제안들을 처리하는데 있어 원칙은 최선의 관행으로 회원국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내각사무처 EU장관은 서로 상이한 EU의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정보와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020 7276 0086로 문의하여 할 수 있다.

### 서설

- 영국에서 시행될 수 있는 법률이나 계약을 협의할 때 RIA를 실시해야 한다. 유럽의 제안으로서는 지령(directives), 규칙(Regulations), 결정(Decisions), EU조항에 해석에 따른 적용, 그리고 양국간 및 삼국간 협조(second and third pillar cooperation)에 따라서 공동 입장과 관행을 포함한다.

유럽제안들을 처리할 경우 기억해야할 핵심 포인트

- 제안자는 규제제안을 제출하는데 있어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다. 위원회가 그것을 관할한다. 따라서 위원회가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 사무총국(Directorates-General, DGs)에서 정책결정자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련자를 찾아 그들과 이야기해야 한다. 그들은 EU 전반에 영향을 미칠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외부 정보를 반가와 한다.

## 제 2 부 규제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제안자는 여러 관계자들(24개 회원국들과 유럽 의회) 가운데 한 사람이므로, 제안자는 이들이 어떤 입장이 제안자 대안과 협상 전략에 정보를 제공할지를 알아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알지 못하고는 누구도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 네트워킹, 로비, 그리고 협조자 결성이 중요하다.
- 비공식/전문적인 운영그룹에 대해 영국 대의제를 준수하라.
- 이행과 집행에 대한 실행가능성은 협상기간동안 간혹 간과되기 때문에 조기부터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
- 유럽담당 직원들은 모든 협상과정에서 영국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들과 정기적인 연락을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 위원회(Commission), 의회(Parliament), 그리고 다른 회원국들의 영구 의원단(Permanent Representations of other Member States)에서 핵심 정책결정자들 의견교환을 위해 브뤼셀에 있는 UKRep를 이용한다.
- 각 부서에서 가장 적절한 관계자를 찾기 위하여 다른 EU회원국들내에 있는 영국대사관들을 통해 외무행정부(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에 문의한다.

### 위원회가 하는 일

다음 사항은 위원회의 선진규제에 관한 2002년 행동계획안(2002 Action Plan on Better Regulation)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개관이다.

- 정책제안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이 2003년 초부터 이행되어, 2005년부터는 정착될 것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체계적인 영향평가과정의 소개. 영향평가는 연례작업프로그램에 올라온 모든 제안들에 적용될 것이다.

- 정책결정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의과정에서의 최소 기준을 세우고 준수**한다는 약속. 이것은 포괄적 접근, 피드백 및 협의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8주의 최소기간을 포함한다. 이행될 수 있는 정책대안의 영향, 평가, 협의회에서의 쟁점 및 그 시기에 대해 설명할 연례작업프로그램에 따라 로드맵이 발표될 것이다.
- 위원회산하 모든 이사회들은 행동계획안(Action Plan)에 서명한다. 영국 정책사무관들의 지원과 보조는 영국을 위하여 우선사항인 본 의제를 이용하는데 핵심이다.

#### 제안자가 할 수 있는 제안들

- 위원회는 모든 제안에 대해 **영향평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2005년 이후의 연례작업프로그램상의 제안들이 발표될 때 영향평가가 완성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제안이 미칠 영향가능성에 대해 영국 데이터**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한다. 본 정보는 영국 RIA의 준비과정에서부터 이용할 수 있다.
- **협의를 위원회가 세운 최소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 협의를 거친 결과들은 제안서를 첨부한 취지설명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 **다른 회원국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독려하여 효율적인 협의에 근거해 올바르게 평가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
- 위원회의 영향평가는 EU 전체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망라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상세히 평가하기 위하여, 유럽제안과 함께 영국 RIA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국이 이용할 목적으로 제출할 정보는 위원회의 영향평가에 이용될 수 있다.

## 유용한 문의처(Useful contacts)

### 내각사무처 선진규제국(Cabinet Office Better Regulation Executive)

BRE의 역할은 정부부처, 기구 및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규제와 정책제안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이도록 보장한다. 추진반의 업무는 규제 영향평가의 전과정의 준수를 통해 관련 부서들이 규제합리화를 이행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2005년까지의 60개 이상의 규제개혁명령(Regulatory Reform Orders)을 포함하여 규제개혁실행계획(Regulatory Reform Action Plan)상의 이행약속을 준수한다.

BRE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안 및 규제들에 대한 개관을 검토함과 동시에, 자원영역과 자선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공공부문에서의 관료주의 및 관료적 형식주의를 축소하는 방법을 조사한다.

주소: Kirkland House, 22 Whitehall, London, SW1A 2WH

전화: 020 7276 2353

웹사이트: [www.cabinet-office.gov.uk/regulation](http://www.cabinet-office.gov.uk/regulation)

### 내각사무처 EU장관실(Cabinet Office European Secretariat)

내각사무처 EU장관실은 서로 상이한 EU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한 정보와 가이드를 제공한다.

주소: 70 Whitehall, London, SW1A 2AS

전화: 020 7276 0086

### 부처별 선진규제실(departmental Better Regulation Units, BRUs)

본 가이드에서 규제합리화와 규제영향평가의 쟁점들에 대해 보다 상세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안자 소속 BRU에 우선적으로 문의해야 하고, BRU는 부서에서 바람직한 규제와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

한 원칙들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이 그 주된 업무이다.  
BRE는 BRU의 세부적인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으며, 020 7276 2353  
에 문의하라.

###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Service, SBS)**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언과 중소기업 영향심사(Small Firms Impact Test)의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SBS에 우선적으로 협의를 구해야 한다. SBS는 또한 규제 또는 제안에 가이드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줄 수 있다.

전화: 020 7215 8378

웹사이트: [www.sbs.gov.uk](http://www.sbs.gov.uk)

### **중소기업협의회(Small Business Council, SBC)**

SBC는 정부에 대한 독립된 영국협의기구이다. 이것의 구성원들(중소기업 소유주의 과반수)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구성원들은 제조, 소매, 정보기술, 미디어 및 홍보활동, 회계업무, 기업지원, 채용, 교육 및 훈련 등에서 선택된 자들을 포함해, 광범위한 기업, 지리적 및 소수민족분야에서 선택되었다.

주소: SBS Secretariat, Kingsgate House, 66-74 Victoria Street, London  
SW1E 6SW

이메일: [sbssecretariat@sbs.gsi.gov.uk](mailto:sbssecretariat@sbs.gsi.gov.uk)

웹사이트: [www.sbs.gov.uk/sbc](http://www.sbs.gov.uk/sbc)

### **공정거래청(the Office of Fair Trading, OFT)**

정책제안의 영향권 안에 있는 시장을 확인하고 경쟁력 분석(Competition Assessment)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는 OFT에

## 제 2 부 규제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우선적으로 협의를 구해야 한다.

주소: Fleetbank House, 2-6 Salisbury Square, London EC4Y 8JX

전화: 경쟁력 분석 상담전화: 020 7211 8500

이메일: competition.assessment@oft.gsi.gov.uk

### 선진규제TF(Better Regulation Task Force, BRTF)

선진규제TF는 1997년 9월에 발족되었다. 이것은 규제와 그 집행이 바람직한 규제 5원칙(the five Principles of Good Regulation)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협의하는 독립기관이다.

- 균형성
- 책임성
- 일관성
- 투명성
- 목적의 명확성

TF는 특정 규제문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예로서 독립규제기관과 규제합리화를 위한 구상적 사고가 있다.

주소: Kirkland House, 22 Whitehall, London, SW1A 2조

전화: Task Force Secretariat on 020 7276 2139

이메일: taskforce@caninet-office.x.gsi.gov.uk

웹사이트: www.brta.gov.uk

### 전자정부추진본부(eGU)

전자정부추진본부는 영국과 그 국민, 그리고 기업들이 지식경제로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국 온라인을 얻기 위한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것은 정책결정자들에게 새로운 정부정책들이 전자세계(e-world)에서 유효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웹사이트: <http://www.cabinetoffice.gov.uk/e-government>

### **협의를 구하는데 참고할 기관들**

영국산업연맹(The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CBI)  
노동조합회의(The Trades Union Congress, TUC)  
영국상공회의소(The British Chambers of Commerce)  
관리자협회(The Institute of Directors, IoD)  
중소기업연합(The Federation of Small Business, FSB)  
전국소비자협의회(The National Consumer Council, NCC)  
소비자단체(The Consumers' Association)  
영국소매협의회(The British Retail Consortium, BRC)  
공학사용자연합(The Engineering Employers' Federation, EEF)  
민간사업장(The Forum of Private Business, FPB)  
영국보험인협회(The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ABI)  
식료품연합회(The Food and Drink Federation)  
독립식품소매연합회(The Independent Food Retailers Confederation)  
독립회사연맹(The Union of Independent Companies)  
독립소매동맹(The Alliance of Independent Retailers)  
자선사업감독위원회(The Charity Commission)  
공동체기구 전국연합(The National Federation of Community Organisations)  
지방기관(The Countryside Agency)  
인종평등위원회(The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기회평등위원회(The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 **환경 NGO, eg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FOE)**

노인복지회(Age Concern)  
장애인권리위원회(The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무역협회에 관한 유용한 안내서가 있다.**

웹사이트: 무역협회에 관한 Google directory

전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 NCVO)는 모든 자원봉사기구를 열거한 자원봉사단체안내서를 발표했다. 이것은 NCVO에서 이용가능하며, 관련한 자원봉사기구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는 다양한 범위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요하다.

이메일: [ncvo@ncvo-vol.org.uk](mailto:ncvo@ncvo-vol.org.uk)

웹사이트: [www.ncvo-vol.org.uk](http://www.ncvo-vol.org.uk)